자료 07-05
기부문화 및 공익법인에 관한 정책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2007. 7

손원익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정책토론회 개요

□ 일　　시　　2007. 7. 13(금) 14:30~17:00

□ 장　　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4:30~14:40　　**인사말**

황성현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4:40~16:50　　**주제발표 및 토론**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 사회자　　유일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발표자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1주제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주제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토론자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교식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국장

김도형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목상균 양영재단 상무

박두준 가이드스타한국재단 사무국장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양용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　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상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

이전오 성균관대 법대 교수

(가나다순)

16:5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제1주제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2007. 7. 13.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Ⅰ. 서 론 ····· 1

Ⅱ. 기부 현황 ····· 2
1. 전체 기부금 규모 ····· 2
2. 개인의 기부금 현황 ····· 5
3. 법인의 기부금 현황 ····· 6
4. 주요국의 기부금 현황 ····· 7

Ⅲ.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 및 문제점 ····· 10
1.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련 세제 ····· 10
2.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 ····· 14
3.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 세제 ····· 15
4.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 27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 29
1. 기본방향 ····· 29
2. 제도 개선방안 ····· 30

Ⅴ.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41

Ⅰ. 서 론

□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큰 정책방향하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교육, 사회복지, 자선, 종교, 문화·예술로 대변되는 비영리분야에서 민간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은 사회복지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고 있음

□ 최근 양극화 현상의 완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민간 기부문화 활성화는 정부와 민간, 소득계층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양극화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로 공동체 의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부의 현황 및 현행 기부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부 현황

1. 전체 기부금 규모

□ 우리나라의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규모에 대해 정확히 집계된 자료는 없음

□ 기부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

○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기부금 규모를 추계하는 것도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실제 기부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인해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또는 실제 기부하였으나, 국세청 신고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면세점 이하의 개인이나 결손법인에 해당하는 기부금이 제외되고 실제 기부하지 않았으나, 국세청 신고시 허위로 신고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기부를 받는 단체 측면에서 기부금 규모를 집계하는 것도 곤란한 것이 현실임

□ 개인과 법인이 세무상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 가능

<표 1> 2005년 기부금공제 인원 및 기부금공제액

		기부금공제 인원	기부금공제액	1인당(1법인당) 기부금공제액
개인	근로소득자	310만명	3.6조원	116만원
	종합소득자	31만명	0.74조원	239만원
	소계	341만명	4.34조원	127만원
법인		3만3천개	2.79조원	8,485만원
합 계		-	7.13조원	-

주: 1. 기부금공제액은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지출액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실제 기부금 규모와는 차이가 있음
2. 종합소득자의 경우 소득공제 금액 기준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2005년 귀속)

<표 2> 법인 및 개인의 연도별 기부금 공제액

(단위: 조원, %)

		1999	2000	2001	2003	2005
기부금계		2.9	4.45	4.67	5.9	7.13
개인	근로소득자	0.8	2	2.7	3.2	3.6
	종합소득신고자	0.05	0.23	0.28	0.54	0.74
	소계	0.85	2.23	2.98	3.74	4.34
	비중	29.3	50.1	63.8	63.4	60.9
법인	금액	2.05	2.22	1.69	2.16	2.79
	비중	70.7	49.9	36.2	36.6	39.1

주: 종합소득신고자는 소득공제 금액 기준

□ 기부금공제액 규모의 추이를 보면 2000년을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구성비중에 큰 변화가 있었음

○ 2000년 이전에는 법인의 기부규모가 전체기부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법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형성되어 있었음

○ 2000년 이후에는 개인 대 법인의 기부비중이 2000년에 50.1% : 49.9%로 개인기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는 63.4% : 36.6%로 개인기부의 비중이 더욱 확대되었고, 2005년에는 60.9% : 39.1%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기부 비중의 변화는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정책은 그 동안 각계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홍보의 결과라 평가되며, 동시에 기부관련 세제의 개선에 따른 정책효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2000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개인기부의 경우 지정기부금에서 법정기부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공제한도가 소득의 5%에서 100%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소득공제 대상소득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서 종합소득으로 확대되었음

- 또한 2000년 기부분부터 모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개인기부의 소득공제 한도를 5%에서 10%로 확대하였음

○ 법인의 경우 2005년 세법개정에서 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기부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였음(05년 이전: 100%, 06~08년: 75%, 09년 이후: 50%)

○ 개인기부 인원도 1999년 174만명에서 2000년 244만명, 2003년 286만명, 2005년 31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개인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법인 및 개인의 기부금공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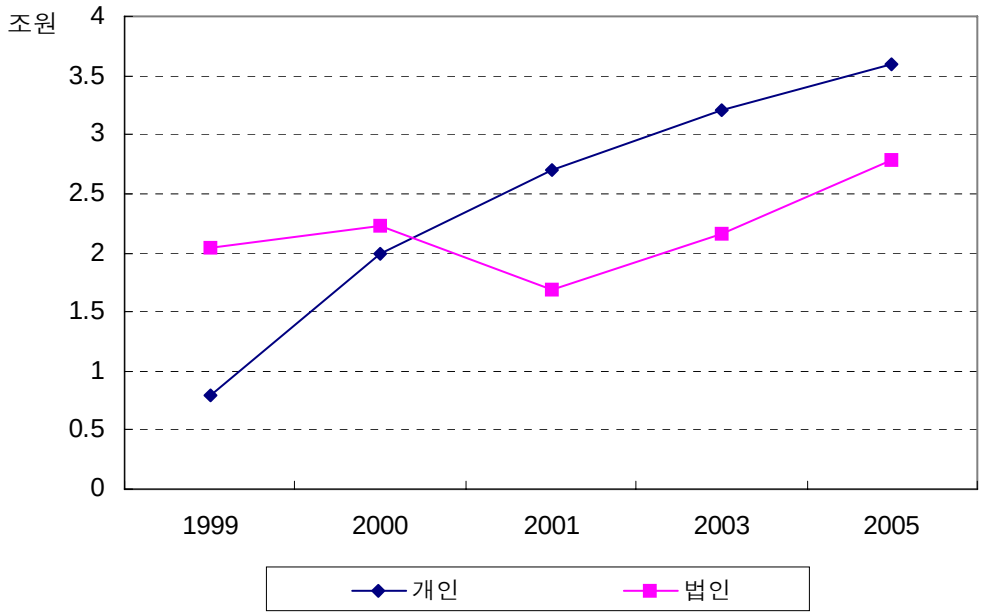

□ 그러나, 우리나라 개인기부가 외국에 비하여 작은 편이며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직계가족 또는 친인척간에 부의 이전이 매우 활발한 편이며,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전체 기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예: 미국 35.8%, 영국 11%, 한국 약 80%)이어서 종교를 제외한 비영리분야에 대한 개인의 기부가 활발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둘째,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에 의문이 있어 왔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실효성이 크지 않아 기부자를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어 개인 기부가 활발해 지지못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됨

□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부의 이전을 사회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보다는 지속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해 기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2. 개인의 기부금 현황

가. 근로소득자

□ 2005 과세기간 신고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1,190만명 중 310만명(26.1%)이 3.6조원을 공제받았고 이는 기부한 근로자 1인당 평균 116만원임

○ 기부금공제금액은 2000년에 크게 증가하였고 2003년, 2005년 기간에는 3.2조원, 3.6조원으로 매년 증가하여 1999년 대비 2005년 증가율은 350%에 달함

○ 기부금공제자 인원도 2001년 263만명, 2003년 286만명, 2005년 310만명으로 증가하였음

<표 3> 근로자 기부금 공제금액 및 공제인원

(단위: 조원, 천명)

	1999	2000	2001	2003	2005
공제금액	0.8	2.0	2.7	3.2	3.6
공제인원	1,741	2,435	2,629	2,858	3,102

□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비중 구간별 기부금 공제인원을 보면, 소득공제한도인 10% 이하에 속하는 기부금공제자가 92.8%를 차지함

○ 소득금액 10% 이하 기부금공제자는 2005년에 288만명(92.8%) 수준

○ 소득금액 10% 초과 기부하는 자는 소득금액 10% 초과 공제가 가능한 법정기부금 지출자 등인 것으로 보임

나. 종합소득자

□ 2005 과세기간 종합소득 신고인원 221만명 중 31만명(13.9%)이 7,400억원의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음(1인당 240만원 기부금 공제)

○ 기부금공제 금액은 2003년 5,374억원, 2005년 7,36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음

○ 소득금액 10% 이하 기부금 공제자는 2005년 30.1만명(92.6%)임

3. 법인의 기부금 현황

□ 2005 과세연도에 352,647개 법인 중 약 9.1%에 해당하는 32,744개의 법인이 기부금공제가 적용됨

○ 기부금공제금액은 최근 2003~2005년 기간에 2.2조원, 2.5조원, 2.8조원 정도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기부법인 수는 2003~2005년 기간 중에 38,000개, 36,000개, 33,000개 정도로 오히려 감소하였음

○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비중도 동기간 중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음

<표 4> 연도별 기부금 공제법인수 및 공제금액

(단위: 개,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기부 법인수	37,245	41,762	37,608	35,713	32,744
기부금 공제액	16,872	18,835	21,587	24,703	27,923

□ 기부금공제 법인수 기준으로 볼 때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비중 5% 이하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액기준으로는 67%에 해당함

○ 기부금 금액으로 보면 1천만원 이하인 경우가 기부인원의 79%, 기부금액의 1.86%를 차지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부인원의 5%, 기부금액의 92.49%를 차지함

○ 상위 20개 기업 기부금이 1.2조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44%를 차지함

4. 주요국의 기부금 현황

□ 영국에 소재한 CAF(Charities Aid Foundation)에서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현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표준화하여 국제비교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사회복지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도를 측정하는 중요지표로서의 역할

○ 주요국들과의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기부수준과 기부목표의 측정이 가능

○ 국제적 기부가 활성화됨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조세혜택과의 형평성에 맞는 조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적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

가. 기부금액의 국제비교

□ 다음 그림은 주요국들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액의 비중을 정리한 내용이며, 주요국들의 평균은 0.5%, 기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으로 1.67%, 가장 낮은 국가는 프랑스로 0.14%임

<그림 2> 각국의 GDP대비 개인 기부금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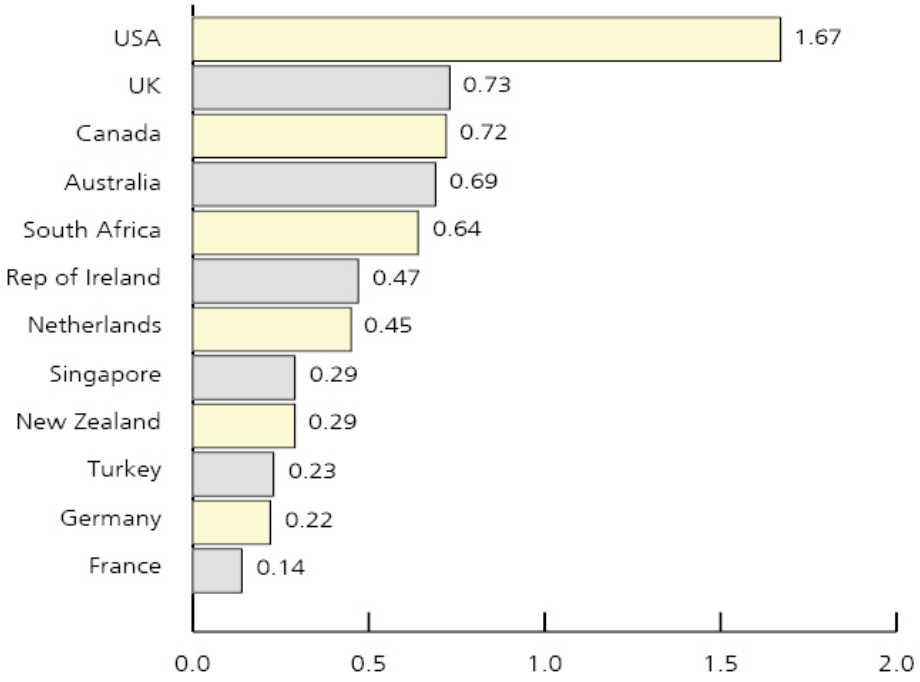

자료: CA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 November 2006

나. 각국의 개인 기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

□ 국가별 세금

○ 정부의 세금(사회보장보험 포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은 개인기부금 규모가 낮고,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낮은 국가들은 더 많은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내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예를 들어, 사회보장부담이 높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우 개인기부금액이 낮고, 영국과 아일랜드 등의 사회보장부담이 낮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남

□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조세혜택의 차이

○ 영국이나 미국 같이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이 큰 국가들은 기부금액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국별로 차별화되는 조세지원의 기부금규모에 대한 효과분석을 수행한 국제적 연구는 아직 없음

□ 국가의 소득수준

○ 국가별 평균 수입과 기부금 규모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

○ 단순 국가별 소득크기보다는 국가 내의 부의 분배 정도와 부에 대한 Gap이 기부금액의 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그림 3>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기부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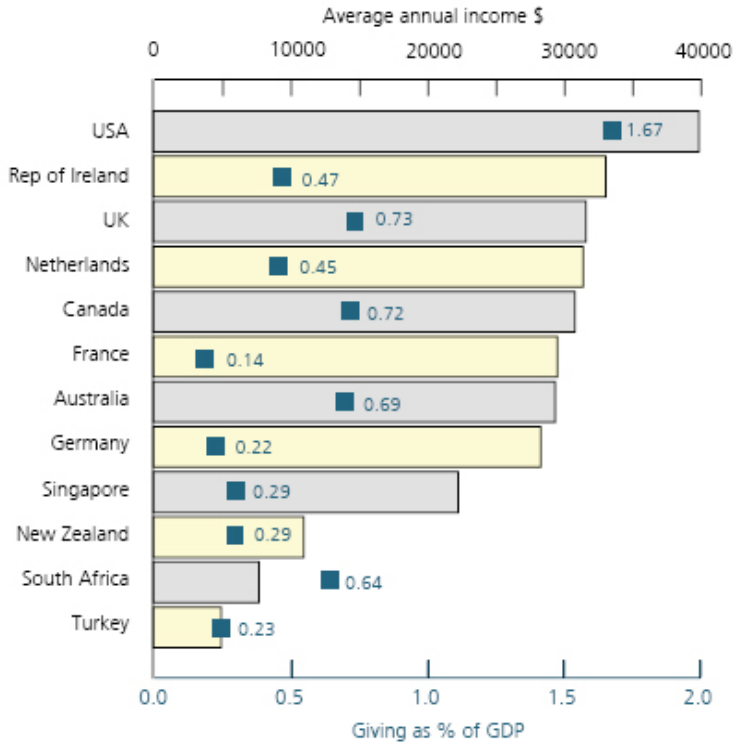

자료: CA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 November 2006

□ 문화의 차이로 인한 기부금에 대한 인식도 기부규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 예를 들어,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의 국민들은 민간보다는 정부가 사회적 필요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는 민간자선단체들에게 사회적 필요에 대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Ⅲ.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기부금 관련 세제

가. 기부금 조세지원제도

□ 기부자에 대하여 소득에서 공제하고, 기부금 종류별로 한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기부금 용도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으로 구분함

○ 과도한 지원 방지 및 사외유출방지 등을 위해 소득공제(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

<표 5> 기부금 유형별 손금산입 한도 및 이월공제제도

종 류	대 상	손금범위		이월공제*
		개인	법인	
법정기부금	· 국가 · 지자체 등 · 사립학교 시설비 등	100%	75% '09년 이후 50%	1년
특례기부금	· 문화예술진흥기금 · 국 · 공립대 병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특정연구기관 등	100% 100% 50%	50% 50%	1년
지정기부금	· 학술 · 장학 · 문화 · 종교 등 공익성단체	10%	5%	3년

주: 사업소득자(법정기부금 제외) 및 법인에 대해 이월공제 허용

나. 사후관리제도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요청시 제출하

여야 함

○ 개인은 2005년, 법인 2006년부터 시행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에는 기부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함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공익성 기부금 단체는 별도의 지정·공고절차 없이 인정되는 법정 공익성기부금단체와 지정·공고절차가 필요한 지정 공익성기부금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음

○ 법정 공익성기부금단체 : 사회복지법인, 학교,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는 공익성기부금단체로 법령에서 직접 규정

○ 지정 공익성기부금단체 : 민법§32에 의한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거쳐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하고 5년마다 재심사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경우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하고 5년마다 재심사

○ 지정·공고한 기부금대상단체의 지정 취소 사유

- 기부금대상단체가 상증법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기부금대상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 기부금대상단체를 상증법상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

○ 기부금대상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면제

○ 사후관리 요건 위반시 증여세 추징(상증법 §48)

- 공익법인 사후관리 내용
  ·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운용소득의 70%,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90% 이상 사용 등

다. 기부자의 자료제출 시스템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서류 제출시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부금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산 제출

□ 종합소득자

○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신고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조정명세서 제출

<그림 4> 개인기부 자료제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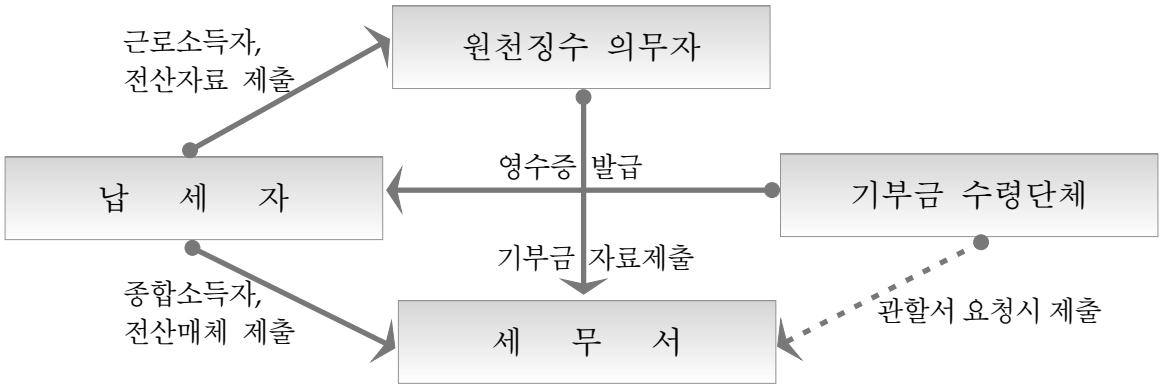

□ 법인

○ 법인세 신고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조정명세서 제출

<표 6> 기부금 지원제도 개요

개인의 기부금 유형 및 공제율	기부받는 단체	법인의 기부금 유형 및 공제율
법정기부금 (100%)	- 국가·지자체 기증 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산학협력단·외국교육기관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장학금('09년 일몰)	법정기부금 (75%) ('09이후 50%)
	- 사립학교병원·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대한적십자병원·국립암센터 등에 대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09년 일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문화예술진흥기금('09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 사회복지시설, 대한적십자사,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한 기부	지정기부금 (5%)
	- 특별재난지역의 자원봉사용역, 정치자금(개인만 적용)	해당없음
특례기부금 (50%~30%)	<개인·법인 소득의 5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사내근로복지기금, 독립기념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 교육방송공사,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09년 일몰)	특례기부금 (50%)
	<개인 소득의 30%범위내에서 비용인정>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해당없음
지정기부금 (10%)	<지정기부금단체> - 학술·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단체, 종교, 의료법인 - 한국보훈복지공단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공고하는 단체 • 지정현황 : 1,172개 지정('07.6.30 현재) - 비영리민간단체(개인만 적용) • 지정현황 : 47개 지정('07.6.30 현재) <특정용도 지출 기부금> - 사립학교등의 장이 추천한 개인의 교육비등 - 영업자단체에 대한 특별회비, 임의단체 회비	지정기부금 (5%)
	- 노동조합비, 교원단체 회비, 직장협의회 회비	해당없음

2. 현행 기부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

□ 경제의 양극화 현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금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 개인기부(근로자)의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이 80% 수준으로 학술·예술·복지단체에 대한 기부는 미미한 수준임

○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과 연계하여 개인 기부금공제 폭을 확대하여 자선, 학술, 문화, 예술단체 등 다양한 곳에 기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 공제내역 관리의 문제점 상존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 세부내역을 신청받고 200만원 이상 기부자의 경우에는 명세서를 국세청에 전산 제출

○ 기부금수령단체는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자의 영수증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하고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 의무화

○ 기부금 수령단체의 직접 자료제출 또는 공개의무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내용과 상호검증이 곤란하여 과다공제 소지가 있음

□ 기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세지원제도 미흡

○ 기부신탁·기부연금 등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등 기부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기부방식에 대한 세제지원이 부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개인: 법정기부금, 법인: 특례기부금)를 제외한 다른 전문모금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분류

- 지원 수준의 차이가 크고, 지원수준이 낮은 전문모금단체는 기부자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기부금 모집이 어려워짐

□ 기부금 한도가 법정·특례 및 지정기부금별로 구분되어 있고, 개인·법인기부금의 범위가 상이하여 제도가 복잡한 문제가 있음

○ 기부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부금 모금단체의 관리비용도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3. 주요국의 기부금 관련 세제

가. 미국

□ 미국에서의 기부에 관한 소득공제규정은 income tax, estate tax, gift tax로 분류

○ 기부에 대한 조세의 기본원칙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소득공제 금액은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내용 등 여러가지 조건과 제한규정에 따라 달라짐.

□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 50% 제한규정 : 다음의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한도액은 총소득의 50%를 넘지 못함

- Public Charity Organizations[1)]
- Private Operating Foundation[2)]
- Private Nonoperating Foundation중 특정요건 충족시

○ 30% 일반제한규정

- 50% 제한규정 대상 외의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경우, 총소득의 30%를 넘지 못함
- 자선단체의 사용을 위한(For the use of any organization) 기부의 경우도 30% 제한 규정이 적용[3)]

□ 법인(Corporation)이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한도는 법인 과세소득의 10%임

○ 법인의 경우는 개인 기부자의 경우와는 달리, 기부대상이나 기부자산에 따른 한도규정이 없음

---

1) 미국정부와 관련기관, 정부나 일반공공의 지원을 받는 조직, Public Organization을 지원하는 조직, 교회단체,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이 포함

2) Private Foundation이란 공중 다수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가 아닌, 한 명 혹은 몇 명의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는 자선단체. 이 중 대부분의 수입과 자산을 직접 자선활동에 사용하는 단체들을 Private Operating Foundation이라 하며, 법률과 시행령에 충족요건이 규정

3) 대표적인 예가 신탁(trust)

□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IRS가 관여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이 면세단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RS의 공익성 검증을 받아야 함

<표 7> 미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개요

<table>
<tr><th>기부주체</th><th colspan="2">기부받는 단체</th><th>소득공제 제한</th></tr>
<tr><td rowspan="4">개인</td><td rowspan="5">IRC §170(c)의 단체</td><td>Public Charities</td><td rowspan="3">• 5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30% Limit(예외)</td></tr>
<tr><td>Private Foundation 중 operating Foundation</td></tr>
<tr><td>Non operating Foundation 중 특정요건 충족시</td></tr>
<tr><td>• 위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170(c)의 단체
• 자선단체를 위한 신탁</td><td>• 30% Limit(원칙)
•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자본이득의 경우 20% Limit(예외)</td></tr>
<tr><td>법인
(일반주식회사)</td><td>• 기부받는 단체에 따른 소득공제제한 구분이 없음</td><td>• 최대10%의 소득공제
• 5년간 이월공제 가능</td></tr>
</table>

□ 미국의 비영리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중에 있음

○ 비영리단체 조직의 수, 자산규모, 기부금, 비용규모, 인력규모 측면에서도 그 규모가 계속 크게 성장하고 있음

○ 미국 국세청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수가 1994년부터 2004년 동안 약 27% 증가하였음

○ 기부금의 규모측면에서 보면, 1973년 기부금 총액은 260억달러였으나, 2003년의 기부금 총액은 2,410억달러[4]임

4) Report of the Commission on Private Philanthropy and Public Needs; Giving in America-Toward a Stronger Voluntary Sector(1975), Giving USA (2004)

□ 기부금의 규모

<표 8> 미국의 기부자별 기부금 규모

(단위: 10억달러, %)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금액의 비율
개인	199.07	76.5
Private foundation	30.00	11.5
유언에 의한 기부	17.44	6.7
회사	13.77	5.3
계	260.28	100

자료: Giving USA 2006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2005

<표 9> 미국의 분야별 기부금 규모

(단위: 10억달러, %)

기부자	기부금액	기부금액의 비율
종교	93.18	35.8
교육	38.56	14.8
건강	22.54	8.7
Human Service	25.36	9.7
공공사회복지	14.03	5.4
예술, 문화, 인문	13.51	5.2
환경과 동물보호	8.86	3.4
국제	6.39	2.5
Foundation	21.70	8.3
unallocated giving	16.15	6.2
계	260.28	100

자료: Giving USA 2006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2005

□ 민간단체에 의한 기부투명성 제고

○ 가이드스타(Guide Star)라는 공공단체를 통하여 기부받은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 1994년 설립된 미국의 가이드스타는 IRS가 정한 “공공자선단체”로서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추진기구임

○ 세법 501(c)(3)의 공공자선단체나 민간재단으로 지정한 860,000개 단체들에 관한 기록과 501(c)상의 감세대상 134,000개 단체들에 관한 자료들을 갖고 있음

○ 공공정보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약 백만개에 달하는 미국 자선단체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또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부자가 기부를 원하는 기관의 상세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연방정부, 주정부를 비롯하여 자선단체 직원, 개인기부자, 기관기부자, 연구자, 규제기관, 언론기관, 자선단체 등 다양함

○ 가이드스타는 IRS와 Form 990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체결하였으며 IRS의 비영리기관 관리감독을 지원하고 있음

- 따라서 IRS의 새로운 자료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가이드스타(Guide Star) 한국재단이 2007년 4월 설립되었으며, 등록단체는 139개이고 이중 회계등록기관이 8개임

나. 영국

1) 기부금 관련세제

□ 영국은 등록된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의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조세지원 대상이 됨

○ 개인의 경우 기부방식에 따라 Gift Aid, Payroll Giving, 현물기부로 구분할 수 있음

□ Gift Aid는 UK 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한 금액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로서 1990년에 도입되었음

○ 기부자에게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본세율(basic rate)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하고 기부받은 자선단체들은 국세청에 Gift Aid payment를 청구함

○ 높은 세율(higher rate)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소득공제시에 높은 세율에 의해 산출된 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높은 세율 납세자가 기부한 Gift Aid에 대하여 자선단체는 기본세율 기준으로만 청구(reclaim)가 가능함

□ Payroll Giving이란 근로소득자나 연금소득자들의 경우,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기부금으로 차감하는 제도임

○ 고용주가 Payroll giving scheme을 운영하는 경우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지불하고 이에 대해 소득공제 형태로 조세감면을 받음

○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급여에서 기부금을 차감하도록 승인하면, 고용주는 이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여 Inland Revenue가 승인한 Payroll Giving agency에 보내고 Agency는 모아진 기부금을 자선단체에 전달

○ Gift Aid의 경우와는 달리, 자선단체가 국세청에 repayment에 대한 청구를 할 필요가 없음

<표 10> 영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개요

기부주체	기부받는 단체	기부방법	조세감면 사항
개인	1. CC(Charities Commission, England와 Wales의 경우)와 OSCR(Office of the Scottish Charity Regulator)에 등록된 Charities 2. "Charities"의 성립요건들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판례로 발전	Gift Aid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기본세율로 세금을 차감한 것처럼 처리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Payroll Giving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접 tax relief가 이루어짐
회사		Gift Aid	“charge on income”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과세수익에서 제외
		Gift of land, building, shares and security	시장가격과 부수비용을 합친 금액에 기부로 인하여 얻은 혜택을 차감한 금액이 조세감면대상

2) 기부금 제도의 발전

□ 오랫동안 계약(Covenant)을 통한 기부방법이 영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제도였으나, 점차 효과적인 세제상의 기부방법으로 1980년 말 Payroll Giving과 1990년의 Gift Aid제도가 도입되면서 기부방법이 다양화됨

○ 2000년에 새로운 기부방법으로 지분과 증권의 기부(Gift of shares and security)에 대하여도 조세감면을 인정하게 되었음

□ 2000년 영국 국세청은 국민들이 새로운 기부금방식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기부방식의 절차를 간단하고 쉽게 조정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도 조세감면을 인정하게 되었음

○ 2000년 개정 이후 특히 Gift Aid의 사용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CAF(Charities Aid Foundation)의 조사[5]에 의하면 Gift Aid를 사용하는 인구비율이 세법개정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00년 Gift Aid 개정은 대중화와 절세기부방식의 접근을 넓혔고, 더 많은 여성들, 젊은이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부유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했다고 평가받음[6]

3) 영국의 기부금 현황

□ 기부금 규모별 기부자와 기부받은 기관

○ 기부자들의 월평균 기부금액은 1페니부터 천파운드 이상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월평균 기부되는 금액의 3/4 이상은 기부자 1/4(25파운드 이상 기부자들)에 의하여 기부되는 것으로 분석됨

---

5) Analysis of giving through Gift Aid January 2006, CAF

6) Analysis of giving through Gift Aid January 2006, CAF

<그림 5> 월평균 기부금 규모별 기부자와 수혜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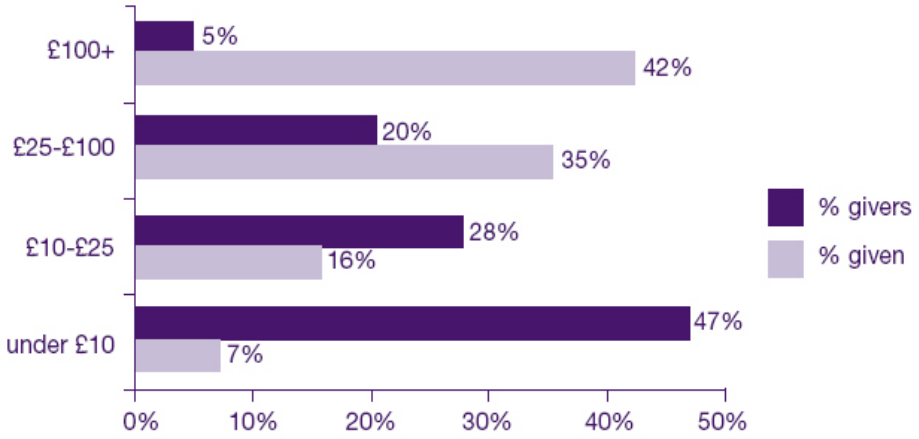

자료: UK Giving 2004/05

□ 기부분야별 기부자의 수

○ 기부분야별 기부자와 기부금액이 가장 많은 부분은 의학연구 분야로, 1/3 이상의 기부자와 기부금액의 13%를 차지하고 의학연구를 다른 건강관련 분야들(병원, 요양원 등과 각종 치료센터 등)과 같이 묶어 살펴본다면, 건강 관련 분야가 총기부금액의 1/4 이상을 초과함

<그림 6> 기부분야별 기부자와 기부자금액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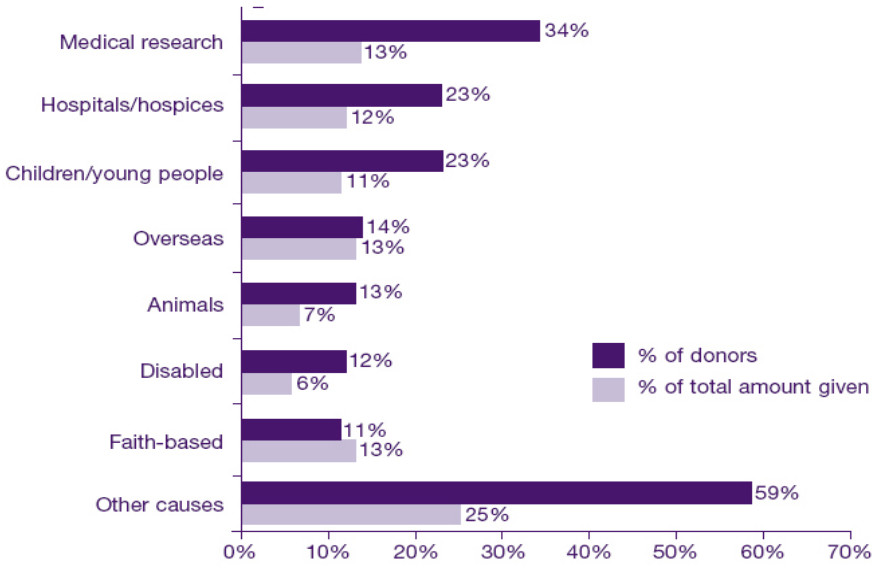

자료: UK Giving 2004/05

□ 연령별 평균 기부금액

○ 월기부액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55세에서 64세로, 1인당 31.68파운드를 기부하고 가장 적게 기부하는 연령대는 16세에서 25세로 1인당 월기부액이 11.32파운드에 이름

<그림 7> 연령별 1인당 평균 월기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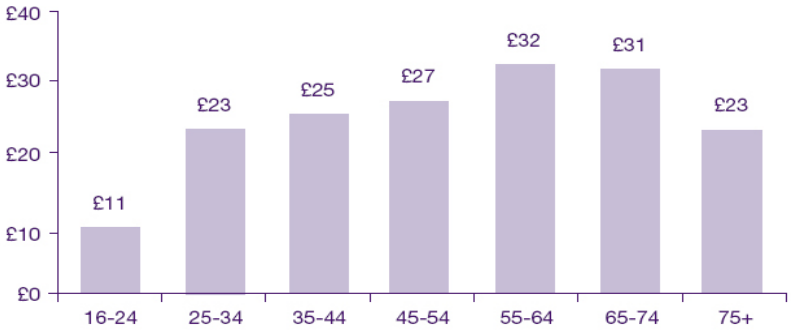

자료: UK Giving 2004/05

다. 일본

□ 일본은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기부금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 기부금의 종류 또는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도 조세지원제도에 차이가 있음

□ 개인의 경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 NPO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이 동일함

○ 기부금 공제액은 다음 ①, ②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서 5천엔(2005년 이전 분은 1만엔)을 차감한 금액임

① 당해 연도에 지출한 특정기부금의 합계액

② 당해 연도 총소득 금액의 25% 상당액

- 특정기부금이란 ①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의 기부금, ②지정기부금(재무대신의 지정에 의함), ③특정공익증진법인에의 기부금, ④ 정치단체 등에의 기부금을 말함
- 총소득금액이란 결손금, 잡손실, 기타 각종 손실의 이월공제 후의 총소득금

액, 특별공제 전의 분리과세의 장·단기 양도소득의 금액, 주식 등에 관한 양도소득 금액, 선물거래에 관한 잡소득 금액, 산림소득금액 및 퇴직소득 금액의 합계를 말함

○ 일반 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법인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에 따라 공제한도액을 달리 정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

○ 특정공익증진법인과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과 별도로 일정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

○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동일액 손금산입

○ 일반기부금은 일정의 손금산입 한도금액을 정하고 있음

□ 일본의 새로운 공익법인 제도(공익법인 제도의 발본적 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결정, 2003.6)는 2008년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의 사단, 재단법인 등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이행 기간」으로, 이 기간 내에 공익성 심사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런 심사과정을 거쳐 비영리법인 중 공익성이 높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인정하며, 현재의 사단, 재단법인 등은 「이행 기간」에 한해 우대세제의 적용이 유지됨

○ 심사과정에서 공익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기부금공제대상에서 제외

<표 11> 일본의 기부금 관련세제 개요

	기부금 유형	공제 한도
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기부금액(소득금액의 30% 한도)- 5천엔) 소득공제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일반기부금	공제 없음
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
	지정기부금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 인정NPO법인에 대한 기부금	소득금액× 2.5% + 자본금액×0.25%
	일반기부금	(소득금액× 2.5% + 자본금액×0.25%)×50%

라. 프랑스

□ 개인이 공익단체(public utility organizations), associations of general interest, 종교단체(religious organizations)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의 66%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의 20%를 한도로 함

□ 특정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470유로까지는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소득의 20%까지 6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인(legal entities)은 general interest associations, 공익협회(public utility associations), 공익재단(public utility foundation)에 기부한 경우,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으며 매출의 0.5%를 한도로 함

<표 12> 프랑스의 기부금 관련세제 개요

	기부 유형	공제한도
개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특정자선단체에 대한 기부	470유로까지: 기부액의 75% 세액공제 470유로 초과금액: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법인	비영리단체에 대한 기부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매출의 0.5% 한도)

자료: U.S. International Granting, 2006

마. 독일

□ 독일의 경우 기부받는 단체가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와 과학·자선·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로 구분됨

○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단체의 경우 소득 합계의 5%까지와 매출액과 임금 합계의 0.2% 중 선택하여 소득공제할 수 있음

○ 과학, 자선 및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단체의 경우에 소득금액의 10%까지와 매출과 임금합계의 0.2%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하며 이월공제가 허용됨

<표 13> 독일의 기부금 관련세제 개요

기부자	기부받는 단체	조세혜택 사항
개인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일반 비영리단체)	• 소득금액의 5%까지와 매출과 임금합계의 0.2%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소득공제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 소득금액의 10%까지와 매출과 임금합계의 0.2% 중 납세자가 택하여 소득공제 • 이월공제 가능
법인	공익, 종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경우 (일반 비영리단체)	• 총소득의 5%까지 혹은 총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 및 급여를 합한 금액의 2% 중 기업이 선택하여 소득공제
	과학, 자선,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 목적 등을 가지는 경우	• 소득금액의 10%까지 혹은 총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에서 지출된 임금 및 급여를 합한 금액의 2% 중 기업이 선택하여 소득공제 • 이월가능

바. 대만

□ 개인의 경우 정부, 교육, 문화, 공공복리, 혹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항목별 소득공제 항목임

○ 공식적으로 등록된 교육, 문화, 자선, 공공복리 단체들의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0%를 넘지 않음

○ 정부, 국방, 군대 후원 등에 기부한 경우는 20% 한도제한을 받지 않음

□ 영리기업이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은 다음에 따라 손금산입이 인정

○ 국방을 위한 건설, 군대 지원, 그 외의 재무부가 인정하는 목적을 위한 기부인 경우, 손금산입 한도는 무제한

○ 공공복지와 관련된 민법 규정과 그 밖의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육, 문화, 공공복지,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기부금의 경우, 손금산입한도가 최대 과세소득의 10%까지 인정

4.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 비교

가. 조세혜택이 인정되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범위

□ 국가별로 요구하는 개별적인 요건들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 교육, 보건, 복지, 예술, 문화, 환경, 동물보호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음

나. 기부금에 대한 국가별 세제혜택 방법

□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나누어짐.

○ 소득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영국

○ 세액공제방식을 사용하는 국가 : 프랑스

○ 소득공제방식 국가들 대부분은 전체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을 한도로 정하여 공제를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영국의 Gift Aid는 소득공제 금액을 자선단체가 반환받는 독특한 방식임

다. 개인기부금의 조세혜택 범위

□ 소득공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이, 세액공제방식 국가에서는 프랑스가 공제혜택이 큼

○ 한국은 개인기부금 소득공제한도가 100~10%로, 기부받는 대상에 따른 공제수준을 달리하고 있음

<표 14> 주요국의 개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인 경우		세액공제인 경우	
미국	50% 또는 3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66%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영국	기부금액의 22% 또는 40%, 공제한도 제한은 없음		
일본	(기부금액(소득금액의 30% 한도) －5천엔) 소득공제		
한국	소득금액의 100%～10% 소득공제		
독일	10% 또는 5% 한도내		

주: 한국의 경우, 개인기부금의 공제 한도가 법정기부금(100%), 특례기부금(100%, 50%), 지정기부금(10%)에 따라 다름

라. 법인기부금의 조세혜택 범위

□ 법인이 기부하는 경우의 조세혜택의 범위는 대부분의 국가가 대동소이함

○ 영국을 제외하고는 보통 소득의 5～1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 한국의 경우도 5%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인정

<표 15> 주요국의 법인기부금 조세지원 개요

소득공제인 경우		세액공제인 경우	
미국	소득금액의 10% 한도내	프랑스	기부액의 60%까지 세액공제 (매출의 0.5% 한도)
영국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일본	기부받는 단체별로 다름		
한국	손금산입한도 50%～5%		
독일	5% 또는 10% 한도내		

주: 1) 일본의 경우, 기부단체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전액 손금산입, (소득금액×2.5%+자본금액×0.25%), (소득금액×2.5%+자본금액×0.25%)×50%로 나뉘어짐

2) 한국의 경우, 법인기부금이 법정기부금(50%), 특례기부금(50%), 지정기부금(5%)으로 분류되어 공제한도가 달라짐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 기본방향

□ 개인의 기부금 활성화 유도

○ 기업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주주의 권익에 대한 침해', '기업의 홍보를 위한 기부' 등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함

○ 그 규모가 과다할 경우 준조세와 같은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

○ 기부 선진국 수준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기부금 부당공제 등 악용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함

□ 기부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기부방식을 다양화

○ 다양한 기부유형 발굴 및 개인의 기부 참여 확산을 위한 전략적인 모금 등 전문성 있는 모금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함

□ 기부단체에 대한 기부자의 신뢰성 제고

○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함

□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이 기부한 금액의 8~35%를 국가가 기부받는 단체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엄격한 관리 필요

○ 의료비, 교육비 공제 등은 허위 영수증 발급시 발급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제어 기능이 존재

2. 제도 개선방안

가. 개인기부 활성화

1) 개인기부금 공제한도 확대

□ 현재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있음[7].

> *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소득령 §81)
> = (당해 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라 판단됨

○ 비영리분야에 대한 민간 역할의 제고가 절실하고, 개인중심의 기부문화가 자리잡기 시작한 시점에서 개인의 기부가 더욱 확대되어 기부문화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 사례를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개인은 소득금액의 30~5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를 한도로 하며, 영국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음

□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범위는 공제한도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기부금공제인원, 기부금공제금액, 세수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2005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소득대비 기부금 비중의 구간별 현황을 보면 소득공제한도가 10%인 현재, 기부금공제인원의 92.8%, 기부금공제액의 78.5%가 한도초과 없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

---

7) 소득세법 §34, §52

○ 소득공제 한도를 15%로 확대할 경우 99.7%(인원 비중)까지 한도초과 없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할 경우 15%에 비하여 추가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기부인원이나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2005년 기준 종합소득자의 경우를 보면 소득공제 한도가 10%인 현재, 기부금 공제인원의 92.6%, 기부금공제액의 79.9%가 한도초과 없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음

○ 소득공제 한도를 15%로 확대할 경우 95.5%(인원 비중)까지 한도초과 없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소득공제 한도를 20%로 확대할 경우 15%에 비하여 추가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기부인원이나 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

□ 기부금공제 한도가 인상되면 2000년 기부금 공제한도 인상(5%→10%)시 기부금공제 금액이 대폭 증가했던 것과 같이 공제 신청액은 증가될 것으로 보이나 기부금 관리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으면 허위공제가 늘어나고 실제 기부금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공제자료 제출 범위 확대 및 가산세 강화 등 기부받는 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과 연계 추진해야 지원의 실효성 제고 가능

2) 기부금 공제의 인적범위 확대

□ 현재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공제하거나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액까지 거주자 또는 사업자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대상에 포함할 필요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라는 측면과 자라나는 세대에게 기부

의 가치를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

○ 다만, 해당 거주자의 기부금공제금액에 포함되므로 현행 기부금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임

□ 전업주부가 남편의 수입으로 기부하더라도 본인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문화 확산

나. 기부 인프라의 확충

1) 기부펀드에 대한 세제지원

□ 펀드수익의 전액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 현재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펀드는 없으나 금융권에서 장학기금에 분배금 전액을 기부하는 수익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펀드 계획 중

○ 투자자가 직접 기부의 주체가 되는 펀드 설정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

- 펀드의 운용·판매보수의 3% 정도 내외를 사회공헌기금에 출연하는 펀드는 다수 존재하나 이 경우 기부의 주체는 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임
- 현행 세법에 따를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부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소득에 합산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펀드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

□ 기부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

<제1안>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대상에 대해 모두 허용

<제2안> 현행 기부금 소득공제대상보다 범위 한정

○ 예) 법정기부금 대상 및 지정기부금 대상 중 사회복지법인·학교·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개인에 대한 교육비·연구비·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 세제지원 방안

○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부분만큼을 비과세

2) 기부관련 신탁상품에 대한 지원

가) 개요

□ 개인이 사망시 또는 계약에서 정한 일정기간 후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생전에 가입한 신탁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특례

○ 공익신탁(신탁법 §65)이란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 사회환원기부신탁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재산을 기부할 의사는 있으나 사망 전에는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득으로 생계에 활용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의 기부수요 흡수 필요

<그림 8> 사회환원기부신탁의 구조 (조건부 공익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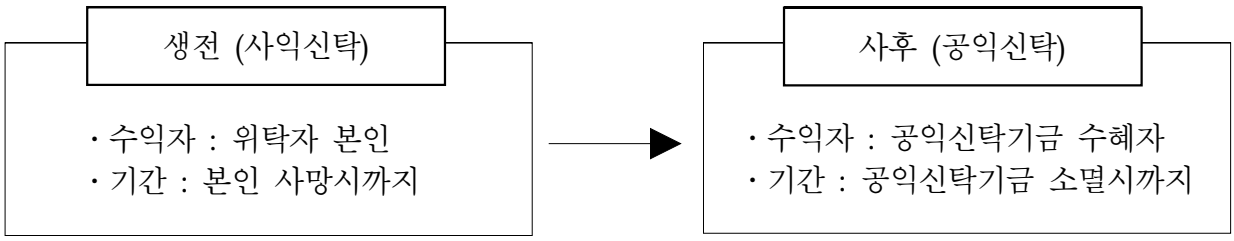

나) 세제지원 방안

□ 지원대상 신탁 요건

○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상증법시행령 §14)으로 전환될 것을 조건으로 설정된 신탁

○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 신탁설정일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추징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점 감안
- 위탁자에게 원금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원금과 수익의 구분이 어렵고, 사망시까지 원금 대부분이 반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망시점까지 원금 유지 필요

○ 위탁자와 공익단체간 특수관계가 없을 것

○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맡아 운용하는 신탁(금전신탁)에 한정

- 금전 외의 재산(유가증권·토지·지상권·무체재산권 등)을 신탁하는 경우는 제외

□ 사회환원기부신탁이익 세제지원방안

<제1안> 신탁설정 단계에서 기부금 소득공제 허용, 위탁자가 신탁발생이익에서 분배받는 금액은 정상과세

○ 현재 사회환원기부신탁의 경우 공익신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사익신탁이므로 신탁설정 단계에서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님

- 상증법시행령 14조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에 신탁하는 기부금의 경우만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공제대상

<제2안> 실제 공익신탁 전환시에 기부금공제하고, 공익신탁으로 전환시까지 이자·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 이 경우 과세특례 혜택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탁자의 연령제한 필요 (예: 40세 이상)

3) 전문모금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개인기부는 법정기부금(100%)으로 법인 기부는 특례기부금(50%)으로 인정하고 있음

○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른 모금기관들은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되어 있어 기부자들의 기관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기부금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표 16> 주요단체의 모금현황(2006년말)

(단위: 억원)

단체명	공동모금회	적십자사	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재단
모금액	2,177	420[1)]	500	396	108

주: 1) 추정치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98 설립)는 타 단체에 비해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받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음

○ 그러나 2000년에 개인기부비율이 42.8%이던 것이 2003년에 20.5%, 2006년에는 16.1%로 감소하여 개인기부보다는 기업기부에 치중해 있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한국복지재단, 월드비전, 아름다운 재단은 70~80%가 개인기부에 의존하고 있음

□ 기부문화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전문모금기관을 통한 전략적 모금기획이 다양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전략적 모금을 통해 기부규모를 늘리고, 모금시장내의 경쟁체계 도입을 통해 모금단체간 연계 등 모금기관의 업무방식을 개선할 계획임

-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면 개정('07 하반기, 가칭 '전문공동모금기관에 관한 법')을 추진중에 있음
- 예를 들면, 미국 United Way of America의 중앙조직은 1,400여개 지역모금회의 연합체로, 단체간 연계, 모금전문가 교육, 전국차원의 홍보, 기업·정부와의 관계 형성 및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 동 법률에 의해 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공동모금기관에 대해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수준의 조세지원

- 개인기부는 법정기부금(100%), 법인기부는 특례기부금(50%)

4) 온라인 기부영수증 시스템 구축

□ 국세청은 증빙서류 발급자의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연말정산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있음[8].

○ 국세청 고시의 기준 : 공인인증서 등 공인된 인증체계 사용, 암호화코드·복사방지마크 등 위·변조 방지

○ 현재 기부금 단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기부자는 증빙서류 구비에 많은 불편이 있고, 기부받은 자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우편송부 등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 초래

□ 기부영수증을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소득공제의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확대

○ 자료의 전산화 및 투명성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부금단체를 인터넷 증빙서류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기부금단체를 대상으로 동 제도 홍보

- 다른 증빙자료의 경우 수입금액과 연계되어 있어 과다 제출 우려가 낮으나 기부금은 상호 연계를 통한 검증이 어려워 허위 제출 가능성이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기부금의 수입·지출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성실한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음

다.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

□ 기부 받는 단체의 투명성 제고는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임

○ 개인 기부가 가장 활발한 미국의 경우 기부 받는 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IRS에서 공익성 검증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 그 기준에 미달

8) 소득세법 시행규칙 §58, 국세청 고시 2006-32호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면세자격을 박탈하는 등 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음

○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Guide Star라는 공공자선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들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체들의 호응도가 높은 편이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스스로의 노력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발급내역 보관범위 확대

○ 기부금수령단체는 연간 50만원('09귀속부터) 이상 기부하는 자의 영수증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 기부자의 자료제출대상 금액과 동일하게 운영할 필요

- 현재 기부금수령단체는 연간 100만원 이상 기부하는 자의 영수증 발급내역을 5년간 보관(개인: 05부터 시행, 법인: 06년부터 시행)

□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처벌 강화

○ '06년 기부금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가산세를 부과함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1%
-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

○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2%로,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는 0.2%로 상향조정함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자를 공개하고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를 지정기부금 단체 취소사유에 포함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단체 등의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준용

○ 법인세법상 지정 공익성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취소 사유 확대

- 현재 상속세·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가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함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교부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지정 취소사유에 추가하도록 함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교부자란 기부자별 발급내역 미작성, 기부금영수증 일정횟수 이상 허위발급 등

라. 허위·부당공제자에 대한 관리 강화

1) 현황

□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관련세액 및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9)]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이며 미납부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 ①미납기간 1일당 3/10,000, ②미납부금액의 5%
-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징수누락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납세고지를 받고 당해 세액을 우선 납부한 후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지급 청구함

○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9)에 따른 처벌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공제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허위영수증 발급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

□ 종합소득 신고자

○ 매년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시 기부금액을 종합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함

9) 소득세법 §158

○ 부당공제시 경정을 통해 부당공제받은 관련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함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은 10%, 부당은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 1일당 3/10,000

2) 개선방안

□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확대

○ 국세청은 2005년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하는 기부금공제액 200만원 이상 기부금지출내역별 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 상호대사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해 기부금명세서 자료제출 대상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함

- 2008년 100만원 이상, 2009년 50만원 이상

□ 상호검증 프로그램 활용 등을 통한 부당공제 관리강화

○ 국세청장은 기부금명세서 제출자의 0.1%에 상당하는 인원에 대한 상호검증(Cross-Checking)을 매년 실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부당공제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가 허위영수증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기간 1일당 3/10,000)를 부과

○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를 직접 조사하여 경정

마. 기부금제도 단순화

1) 현황

□ 현재 기부금 관련제도가 지나치게 복잡

○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여부 및 기부받는 단체의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특례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예를 들면, 개인이 하나의 단체(예: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에도 동 기부금이 사회복지시설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으로, 해당 단체의 복지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달리 구분함

□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한도 상이

(예) 아름다운재단(지정기부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정기부금)는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부금 공제한도가 상이하여 공제한도가 낮은 단체는 기부자의 신뢰도 저하

2) 개선방안

□ 기부금 제도의 단순화를 위해 특례기부금 제도 정비

○ 예측가능성 보호 차원에서 일몰시한(09. 12. 31)까지는 현행을 유지하되, 일몰 심사 강화

○ 특례기부금이 기득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연장은 1차에 한하고, 2차 연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

- 즉, 2차 일몰시한 도래시에는 일몰연장 없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Ⅴ. 제도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 기부의 확산은 조세제도보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음

○ 사회·문화적 변화 없이 조세제도의 개선만으로 기부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그러나, 조세제도의 개선이 사회·문화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음

○ 기부문화 확산이 국가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소득공제한도 인상,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 개인기부금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 조치를 통해 개인 기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기부신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부방식을 허용하고 이에 대해 세제지원을 해 줌으로써 기부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선택의 자율성도 제고할 수 있음

□ 전문모금기관이 기부문화 확산의 전략적 거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부문화를 전반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문헌

손원익, 『비영리법인 관련세제의 선진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조세편람, 영화조세통람, 2007.

재경상보사, 도설 일본의 세제, 2005.

중앙경제사, 詳解 NPO法人 實務必携, 2006.

CAF,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aritable giving November 2006.

IBFD, *European Tax Handbook,* 2006.

Lester M. Salmon, The International Guide to Nonprofit Law, John Wiley & Sons, Inc., 1997.

Bruce R. Hopkins,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 2005.

http://www.hmrc.gov.uk/charities/giving-to-charities-indiv.htm, "Giving to charities by individuals"

제2주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2007. 7.

김진수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Ⅰ. 서론 ····· 1

Ⅱ. 공익법인의 개관 ····· 4
1. 공익법인의 범위 ····· 4
2. 공익법인과 관련한 과세이론 ····· 6
3. 공익법인의 현황 ····· 12

Ⅲ.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 15
1. 법인세 ····· 15
2. 상속세 및 증여세 ····· 17
3. 부가가치세 ····· 18

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 19
1. 공익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 19
2. 출연자의 사적지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 21
3.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 22
4.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 26

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29
1. 기본방향 ····· 29
2.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방안 ····· 31
3. 공익법인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 38
4.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 ····· 44

Ⅵ.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 51
1. 기본방향 ····· 51
2.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제한 완화 ····· 52
3.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 ····· 55
4. 사후관리제도의 합리화 ····· 56
5.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59

Ⅶ. 결론 ····· 60

참고문헌 ····· 64

표 목 차

<표 Ⅱ-1> 공익사업의 범위 ····· 5
<표 Ⅱ-2> 연도별 법인수 현황 ····· 13
<표 Ⅱ-3> 공익법인 현황 ····· 14
<표 Ⅱ-4> 공익법인의 자산규모별 현황 ····· 14
<표 Ⅵ-1>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요약 ····· 58

그림 목차

[그림 Ⅱ-1] 외부경제와 조세 ····· 8

Ⅰ. 서론

□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양화하면서 정부의 지출만으로 사회복지,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됨.

○ 정부가 다양해진 사회적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공익법인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수행해야 하지만 여력이 없거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해서 수행함.

○ 그러나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맡기면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하여 최적수준 이하로 과소공급됨.

○ 정부는 공익활동의 적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또는 그 운용소득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으며,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 또는 기업의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인해 세수입의 손실을 보지만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그 이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함.

○ 즉, 정부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이 공익법인에 출연되어 공익사업에 사용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그 만큼 감소하게 될 것임.

○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충족시킬 수 없었던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사업의 수요를 공익법인이 대신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임.

□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필수적이

지만, 아직 주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수는 적은 편이며 공익법인의 활동도 크게 미흡한 편임.

○ 그나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는 좋지 않은 인식의 대상이 되기도 함.

○ 또한 공익법인은 다양해진 사회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하지 못하고, 또한 빈곤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보다는 빈곤층을 직접 구제하는 초보 단계의 자선행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익법인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과 기부 등을 통해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런데 만일 공익법인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 사회적으로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므로 공익법인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따라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는 공익법인 활성화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관리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법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할 것임.

○ 공익법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리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한편, 인센티브로서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에 대해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에서는 공익법인 관리 및 회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과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음

○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안,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동일법인 주식출연한도 및 계열법인 주식보유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1].

1) 공익법인에 대한 재산의 출연과 함께 개인의 기부에 대해서도 조세지원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이 문제는 앞의 제1주제발표에서 논의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음.

Ⅱ. 공익법인의 개관

1. 공익법인의 범위

□ 공익법인은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함.

○ 공익사업의 내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으며,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음.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민법 제32조의 규정[2]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3]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 공익법인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의 이익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일부 계층만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도 됨.

○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속하나 모든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공익성의 내용은 환경변화, 기술진보 및 시대추이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의 범위를 관련법규에 포괄적으로 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

2)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비영리법인)으로 할 수 있음.

3)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이거나,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에 해당하면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함.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과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을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공익법인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를 규정함에 있어서 재산을 출연받은 단체의 법인격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 그 대신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그 단체의 주된 목적사업의 내용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중요시하고 있음.

<표 II-1> 공익사업의 범위

	공 익 사 업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함).
1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1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12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13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함)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14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장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7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8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자료: 영화조세통람, 『조세편람』, 2007.

2. 공익법인과 관련한 과세이론

가. 공익법인과 조세

□ 영리법인과는 달리 공익법인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첫째, 공익법인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회복지,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사업 등 국민복지 기능을 상당부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임.

○ 정부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 과세하여 그 세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그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이 공익사업에 출연되기를 기대함.

○ 이 때 공익법인의 공익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정부의 재정지출의 감소

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면제에 따른 세수손실보다 크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타당한 것임.

□ 둘째,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은 그 자체가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를 낳는 일종의 공공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공익활동은 그 활동에서 얻게 되는 사적이윤이 실제의 비용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짐.

○ 이러한 재화를 시장기구에만 맡기면 최적수준 이하로 과소공급되기 때문에 적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임.

□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정부 역할을 [그림 Ⅱ-1]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함[4].

○ 외부경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생산의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인 q_0에서 생산량이 결정됨.

○ 그러나 외부경제를 고려하면 사회적 최적생산량은 한계편익이 사회적 한계비용[5]과 같아지는 수준인 q^*가 됨.

○ 이와 같이 외부경제가 존재할 때에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더 적은 생산이 이루어짐.

○ 이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해주면 사적 한계비용(PMC)이 PMC′로 낮아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정한 q^* 만큼의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것임.

4) MB는 생산의 한계편익을 나타내며, PMC는 사적 한계비용을 나타냄.

5) 사회적 한계비용은 사적 한계비용에서 외부적 한계편익을 차감하여 구한 것임.

[그림 II-1] 외부경제와 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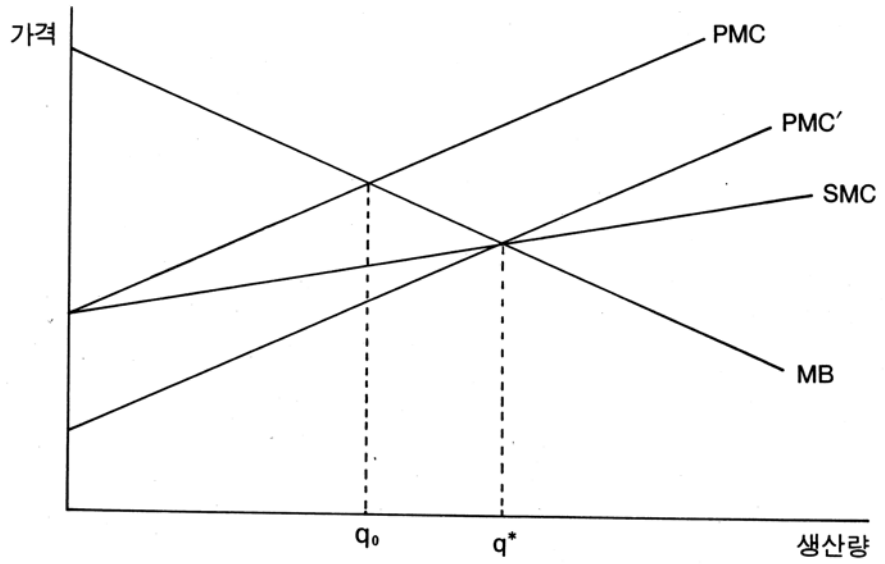

□ 그러나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합리성과 형평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유발함.

○ 첫째,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혜택은 세원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둘째,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변칙적인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공익성을 빙자하여 조세회피를 할 소지가 있음.

○ 셋째, 과세상 특혜를 받는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영리법인과의 경쟁관계는 불공정경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형평상 문제가 발생함.

□ 따라서 정부는 공익법인이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재산출연을 하여 조세회피를 하고 부의 세습수단으로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임.

나.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경쟁

□ 비영리법인[6]과 영리법인과의 경쟁관계는 불공정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결과임.

○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경쟁관계에 있는 영역에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게 되면 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 Brhlikova(2004)의 연구를 예로 들면, 그는 한 산업[7]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두 기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쟁관계를 모형으로 설명함.

○ 비영리법인은 생산활동으로부터 이윤을 내지 않고 품질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영리법인은 생산활동으로부터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고, 또한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기호가 다름.

○ Brhlikova(2004)는 독점(monopoly)산업과 복점(duopoly)산업의 경우를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복점산업의 경우 두 기업의 극대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시될 수 있음[8].

- 비영리법인 $Max_{q_n,\, p_n}\ q_n \ \ s.t. \ \left(1-\frac{p_n-p_f}{q_n-q_f}\right)p_n = (1-s)q_n^2$

- 영리법인 $Max_{q_f,\, p_f}\left(\frac{p_n-p_f}{q_n-q_f}-\frac{p_f}{q_f}\right)p_f - q_f^2$

○ 1차조건(first order condition)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해를 구할 수 있음.

$$(q_n\,,\ q_f)$$

$$= \left(\frac{8a(170+71\sqrt{2(1+s)}+s(-26+\sqrt{2(1+s)}))}{(1-s)(97-s)^2}\,,\ \frac{4a(99+s-14\sqrt{2(1+s)}}{(97-s)^2}\right)$$

○ 위의 해로부터 비영리법인은 시장의 반이 넘는 상위 소비자에게 높은

6) 여기서는 공익법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을 포함하는 비영리법인까지를 말함.

7) 이러한 산업으로는 의료, 교육, 연극제작, 교향악단,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조직 등이 있다고 지적함.

8) p_n: 비영리법인의 가격, p_f: 영리법인의 가격, q_n: 비영리법인의 품질, q_f: 영리법인의 품질, s: 보조금(세금감면, 기부금 등)

품질의 제품을 팔게 되고, 영리법인은 시장의 1/4을 조금 넘는 하위 소비자에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팔게 된다는 결론을 얻음[9].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과 그렇지 않은 영리법인의 경쟁은 불공정경쟁이 될 수밖에 없음.

○ 이러한 측면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반대하는 논거가 되기도 함.

○ 그러나 공익법인은 국가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그 대신 공익법인이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다. 상속세와 기부

□ 조세는 개인의 생애주기에 걸친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기부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되는 영향을 미치게 됨.

○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면 세전의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고 할 때 기부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기부를 더 적게 하게 됨.

○ 반면 세금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개인의 세후 재산이 커져서 기부를 더 많이 하게 함.

□ 이와 같이 상속세와 기부의 관계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특히 미국에서 유산세(estate tax)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음[10].

---

9) 예를 들면 s가 1인 경우 영리법인은 가격 0.0075, 품질 0.0337, 비영리법인은 가격 0.1019, 품질 0.2299에서 균형을 이루게 됨.

10) CBO의 추정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에 개인이 1,960억달러의 기부를 하였고, 또한 160억달러를 사후에 유증에 의해 기부하였음.

○ 2001년 경제성장과 감세조정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을 공표하면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비과세한도를 증액하고 세율을 낮추고, 2010년에는 유산세를 폐지하고 증여세는 존속시키기로 함.

○ 그러나 이 법률은 한시적인 법률의 형태를 띠고 있어 후속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2011년에 다시 1997년의 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음.

□ 이와 같은 과정에서 유산세(estate tax)정책이 기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실증 분석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Greene and McClelland(2001)의 연구를 예로 들면 실증분석을 위한 모형은 다음과 같음[11].

○ $In\, C_i = \beta_0 + \beta_1 In\, P_i^I + \beta_2 In\, Y_i + \beta_3 In\, P_i^B + \beta_4 In\, W_i + \Sigma_i \gamma_i Z + \mu_i$

○ 실증분석결과 유산세의 인하는 기부에 정(positive)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산세를 폐지하는 경우 기부는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Greene and McClelland(2001)의 연구방법을 채택하되 개인의 기부에 대한 최신자료를 이용한 미의회예산국(CBO, 2004)의 공식적인 보고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음[12].

○ 유산세(estate tax)가 폐지되면 생전의 기부는 6% 내지 1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유산세가 폐지되면 사후의 유증에 의한 기부는 16% 내지 2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유산세와 기부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유산세를 반대하는 다양한 주장이 있음.

○ 상속세를 부담하면 소비와 저축이 감소하게 되어 투자가 감소하게 되

---

11) C_i: 기부금수준, P_i^1: 기부의 조세가격, Y_i: 현재의 소득, P_i^B: 유증과세가격, W_i: 부, Z: 개인 및 가계의 특성

12) Bakija and Gale(2003)과 Irons(2003)의 연구에서도 유산세가 폐지되면 기부가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타남.

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을 저해함.

○ 가족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면 사업을 분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상속세는 가족기업의 승계를 매우 어렵게 하는 면이 있음.

○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는 이미 재산의 형성시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 상태에서 또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이중 또는 삼중과세임.

□ 그러나 미국의 일부 최상위 재산가들은 오히려 상속세 폐지 움직임을 비판하였음.

○ 'Responsible Wealth'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부자의 사회적 책임, 부와 권력의 집중, 빈부격차 심화, 자선문화의 파괴 등을 이유로 들어 상속세 폐지를 반대했음.

3. 공익법인의 현황

□ 비영리법인의 연도별 추이는 <표 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음.

○ 비영리법인의 수는 2001년 12,791개에서 2005년 13,587개로 증가했으나, 총법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의 4.5%에서 2005년에는 3.8%로 감소하였음.

○ 이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 동안 영리법인의 수가 26.9% 증가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의 수는 불과 6.2%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임.

○ 그러나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이러한 통계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를 함으로써 파악되는 수치로서 실제 비영리법인의 수치 보다 작은 수치임.

<표 II-2> 연도별 법인수 현황

(단위: 개, %)

	2001	2002	2003	2004	2005
영리법인	273,561 (95.5)	304,880 (96.1)	317,055 (96.0)	328,181 (96.0)	347,234 (96.2)
비영리법인	12,791 (4.5)	12,274 (3.9)	13,132 (4.0)	13,685 (4.0)	13,587 (3.8)
합계	286,352 (100.0)	317,154 (100.0)	330,187 (100.0)	341,866 (100.0)	360,821 (100.0)

주 : ( ) 안은 비중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공익법인의 연도별 추이는 <표 Ⅱ-3>에서 보는 바와 같음[13].

○ 2001년 공익법인의 수는 11,063개였으나, 2005년에는 26,517개로 4년 동안 139.7% 증가하였음.

□ 공익법인의 성격별로는 종교 관련 공익법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종교 관련 공익법인의 수는 2001년에 3,810개로 전체의 34.4%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에는 16,414개로 전체의 61.9%를 차지하였음.

□ 2001년에는 종교 관련 공익법인 다음으로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 학술·장학·자선 관련 공익법인, 교육 관련 공익법인의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종교 관련 공익법인 다음으로 학술·장학·자선 관련 공익법인, 사회복지 관련 공익법인, 교육 관련 공익법인의 순이었음.

13)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므로(국세청 (2007)) 공익법인의 수가 영리법인의 수보다 작아야 할 것이나, 수익사업이 없어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수는 <표 Ⅱ-2>에서 파악되고 있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의 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Ⅱ-3> 공익법인 현황

(단위: 개, %)

	교육	학술·장학·자선	사회복지	의료	종교	문화	기타	합계
2001	1,727	1,826	1,972	382	3,810	351	995	11,063
2002	1,531	1,862	1,962	380	3,890	365	997	10,987 (△0.7)
2003	1,512	1,896	1,970	377	3,881	367	1,174	11,177 (1.7)
2004	1,685	2,333	2,129	457	8,561	391	2,256	17,812 (59.4)
2005	1,749	2,732	2,505	452	16,414	451	2,214	26,517 (48.9)

주: 각 연도 말일 기준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2005년을 기준으로 공익법인의 자산규모별 현황을 <표 Ⅱ-4>에서 살펴보면, 10억원 미만의 공익법인이 23,394개로서 전체 공익법인 26,517개의 88.2%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공익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자산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수가 324개에 달하며, 그 중에서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수가 176개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공익법인이 적지 않은 상황임.

<표 Ⅱ-4> 공익법인의 자산규모별 현황

(단위: 개, %)

총계	1,000억이상	500억이상~1,000억미만	100억이상~500억미만	50억이상~100억미만	10억이상~50억미만	10억미만
26,517 (100.0)	176 (0.7)	148 (0.6)	689 (2.6)	483 (1.8)	1,637 (6.2)	23,384 (88.2)

주: 2005년말 기준임.
자료: 국세청.

Ⅲ.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1. 법인세

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경리

□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 공익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함(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2항).

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공익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14]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한도액 범위[15]안에서 손금에 산입함(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

14) 고유목적사업은 당해 공익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함.

15) 손금산입의 한도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됨.

① 전액 손금산입 대상 소득 : 이자소득금액,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배당소득금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및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② 70% 손금산입 대상 소득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장학재단의 전액손금산입 대상 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등(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2항).

③ 50% 손금산입 대상 소득 : 전액 손금산입 대상 소득 및 80% 손금산입 대상 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공익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액은 익금에 산입함(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 해산한 때

○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기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공익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법인세법 제29조 제4항).

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 공익법인의 이자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법인세법 제62조).

○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 방법에 의해 납부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됨.

□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간이신고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기납부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라. 토지 등 양도소득과 관련한 특례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소

유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하는 방법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는 방법[16]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법인세법 제62조의 2).

2. 상속세 및 증여세

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가액불산입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수의 5%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후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함.

나.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다만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총 발행주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

16)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의 법인세 신고 대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방법임.

3. 부가가치세

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 ○ 공익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용역 등

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의 재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

- ○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Ⅳ.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제도

□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여러가지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음.

1. 공익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가. 출연재산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그 재산의 전부를 사용하여야 함[17].

□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거나 3년 이내에 미사용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 다만 출연재산의 사용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주무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외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3항).

나.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18]

---

17)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운용소득 중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2).

○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 평균하여 그 사용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6항).

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19]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됨[20].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8)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 방법에 준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익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운용소득을 계산하되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19)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사용기준금액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이상, 2년 이내에 60% 이상, 3년 이내에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20)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매각대금으로 일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제외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 6 제2항).

를 과세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

○ 또한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1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30% 이상, 2년 이내에 6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7항).

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시에는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할 때에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2. 출연자의 사적지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가. 이사선임 및 중요사업 결정권 배제

□ 상속인이 이사선임 및 중요사업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공익법인을 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상속인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아야 함.

○ 상속인은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아야 함.

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제한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제한함[21].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 출연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함.

○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과세함.

3.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한

□ 대기업집단이 문화재단 등을 설립하여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과 지주회사화 방지를 위하여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출연받은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22].

---

21) 공익법인의 직접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거래로 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9조 제2항).
○ 출연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 교육기관이 특정 연구시험용 시설 등을 출연받아 출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당해 공익법인이 의뢰한 연구용역 등의 대가 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22)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에는 주식을 출연받은 날 현재, 그리고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하는 날 현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 주식을 합하여 5% 초과 여부를 판정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6항).
①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출연일 현재 5%를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2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5%를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나.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의무

□ 공익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초과분을 다른 주식으로 대체하여 보유하거나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24].

□ 공익법인이 주식처분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매 사업연도말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4항).

○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

② 출연 또는 취득 당시 당해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그 내국법인의 주식
③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그 내국법인의 주식
④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23) 다만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 주무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24) 직접공익목적사업에의 사용실적 기타 당해 공익법인의 공익기여도를 감안하여 다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매각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 성실공익법인(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공익법인을 말함).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다. 계열기업주식의 보유에 대한 제한

□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25]의 주식의 가액이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26].

□ 당해 공익법인의 총 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주식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 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해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 제78조 제7항).

라.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제한

□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27]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이사 현

---

25)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자가 ①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함.
① 출연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특정기업의 주주인 경우로서 당해 기업과 다음 ⓐ~ⓒ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경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
② ①의 본문 또는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③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6) 주식보유한도 규정은 공익기여도를 감안하여 "주" 13)에서 언급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27)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출연자와 다음 ①~⑧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① 친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출연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출연자와 ①~③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⑤ ③ 본문 또는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출연자와 ①~⑤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⑦ 출연자와 ①~⑥의 자가 발행주식 총수 등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⑧ 출연자와 ①~⑦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봄)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를 제외함)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당해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6항).

마. 특정기업에 대한 광고 제한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하는 것을 제한함.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0항).

바.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익사업에 대한 제한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회 전체의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출생지·직업·학연 등에 의하여 특정계층에만 공익사업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

○ 특정계층에 제공된 자산가액이나 경제적 이익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그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4.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제도

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보고의무

□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여부에 대하여 3인 이상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28]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납세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29].

□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 제5항).

○ 다만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은 예외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나. 출연재산명세서의 보고의무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

---

28)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 ○ 자기내부거래 위반 여부, 동일종목주식의 5% 초과보유 여부
- ○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 여부
- ○ 공익법인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29)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을 받지 않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 출연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출연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전체 출연재산가액의 5% 미만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는 사항에 관한 서류[30]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출연재산명세서 등 법령에서 정한 관련 서류를 결산보고일까지 제출하여야 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보고서에 불분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니 불분명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함.

다.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공익법인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운용내역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과세연도 종료후 10년간 비치하여야 함[31].

□ 공익법인이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

30)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 출연재산(출연재산의 운용소득 포함)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 다음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공익법인출연재산에 대한 보고서
- 출연받은 재산명세서
-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3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봄(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4조).
○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는 증여세로 부과함(상속세및증여세법제78조 제5항).

○ 다만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 등을 참작하여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은 예외적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 의무

□ 공익법인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1. 기본방향

□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복지의 증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민간단체, 특히 공익법인의 보완적 역할이 필수적임.

○ 공익활동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시장기구에만 맡기면 최적수준 이하로 과소공급되기 때문에 적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 또는 그 운용소득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줌으로써 이러한 분야로의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함.

○ 또한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지출에 대해서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기부의 활성화를 촉진함으로써 공익법인이 재원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여 그 세수입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그 재산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이 공익사업에 출연될 수 있도록 유도함.

○ 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은 만일 정부가 직접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세수입을 포기함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는 제도임.

□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활성화가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은 주요 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편임.

○ 그나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공익법인 중에서는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 공익법인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 사회적으로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므로 공익법인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는 공익법인이 활성화되는데 전제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

○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엄격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일 때, 더 많은 사업가나 재산가가 더 많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되고 개인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임.

○ 현재도 출연재산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강제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많은 공익법인의 사업을 과세관청이 일일이 살펴보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공시제도, 전용계좌 도입, 회계기준마련 등 공익법인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공익성 제고방안,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함.

○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경우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더 많은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한편, 본고에서 제시하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교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학교법인은 일부 제도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음.

○ 공익법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사업의 종류, 규모, 형태, 소관주무관청 등에 있어 매우 복잡다기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일시에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내용에 따라 자산규모,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우선 규모가 큰 공익법인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교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종교단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의 헌금(대부분 익명)을 기본재산으로 하는 특성상, 세법에 의한 사후관리 및 증여세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함.
- 또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장부의 비치·보관의무도 면제되며, 형태도 법인·법인격없는 사단 등 매우 복잡다기하고, 주무관청에 의한 설립·관리감독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고에서 제시하는 투명성 제고방안의 적용대상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학교법인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이 없지 않지만, 본고에서 제시하는 투명성 제고방안의 상당부분이 현재도 사립학교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일부 제도의 적용대상에서만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방안

가. 주무관청에 의한 공익성 심사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상당부분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즉,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에 해당하는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함.

○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두고 있으며 비

영리법인의 설립을 원하는 자는 이 규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관할 부처의 해당과에 제출하고 설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주무관청은 허가신청에 대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함.

-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중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음.

○ 한편,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것
-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 이외의 대표적인 공익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인데, 이 법에서는 공익법인의 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설립허가 신청을 하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함.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상과 같은 공익법인 허가절차를 검토해 보면,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은 이 법에 의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해 주는 것이므로 공익성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음.

○ 다만,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증진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동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성의 여부가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IRS가 관여하지 않지만, 면세지위를 인정받는 IRC §501(c)(3)의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IRS의 공익성 테스트를 받아야 함.

○ 공익성을 검증하기 위해 IRS는 조직테스트(organizational test)와 운영테스트(operational test)를 실시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익법인의 면세자격 부여를 위해 설립정관과 실질적인 운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임[32].

□ IRS는 조직테스트에서 공익법인의 정관(articles of organization)을 평가자료로 활용하며, 정관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함.

○ 해당 기관의 설립목적으로 IRC §501(c)(3)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면세목적(exempt purposes)[33] 중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기관의 면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해당 기관의 자산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세목적을 위해 일단 헌납되

32) Treas. Reg. § 1.501(c)(3)-1(c)

33) 자선(charitible), 종교(religious), 교육(educational), 과학(scientific), 문학(literary), 치안점검(testing for public safety), 전국 또는 국제 아마추어 스포츠 대회 활성화(fostering national or international amateur sports competition), 아동 및 동물학대 방지(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 or animals)

면, 조직 청산되더라도 해당 기관의 주주 또는 구성원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익법인 혹은 정부(지방정부 혹은 연방정부 등)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정관에 설립목적에 따라 영위할 상세한 활동내역을 포함하여야 함.

□ 운영테스트에서는 공익법인의 주요 활동사업이 정관에 규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면세목적 달성과 관련 있는 것인지를 검토함.

○ 만일 공익법인이 상당부분 목적 달성과 관련 없는 활동을 수행하였다면, 공익성이 결여된 법인으로 판단되어 면세지위를 상실하게 됨.

○ 이때 공익법인의 주요 활동 여부는 ① 면세목적과 관련 있는 활동비중, ② 면세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비중, ③ 공익법인의 면세목적 및 면세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과의 관계(관계가 가까울수록 면세 목적과 관련 있는 활동), ④ 전통적, 상업적인 활동과 면세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과의 관계(활동양상이 상업적일수록 면세목적과 관련 없는 활동) 등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후 평가하여야 함.

□ 일본에서는 공익인정위원회를 내각부에 설치하여 공익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심사과정을 거쳐 비영리법인 중 공익성이 높은 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공익법인(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으로 주무부처가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기로 함.

○ 공익인정위원회는 2007년 4월 내각부에 설치되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에는 사무국이 설치되어 사무국장, 사무국 차장, 참사관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공익법인 제도의 기본적 구조는 법인격의 취득과 공익성의 판단을 분리하는 것임.

○ 일반사단법인·일반재단법인의 신청에 대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공익인정위원회에서 공익성을 심사하고 그 의견을 근거로 하여 내각총리대신 또는 도도부현지사가 공익사단법인·공익재단법인으로 인정함.

○ 현재의 사단, 재단법인 등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이행기간」으로서

이 기간 내에 공익성 심사를 거쳐 새로운 제도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공익법인 설립과 관련한 제도를 미국 및 일본의 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특히「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시 그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공익성 검토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즉, 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허가시 공익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익법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면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2) 개선방안

□ 공익법인은 정관 등을 통한 사업의 목적과 공익활동에 적합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따라서 무엇보다도 설립단계에서부터 그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전적으로 공익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이를 위해 먼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에서 법인설립·허가단계부터 공익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설립되도록 하는 절차가 요구됨.

○ 일본의 경우, 비영리법인 중 공익성이 높은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심사하는 공익인정위원회를 금년에 내각부에 설치하여 2008년부터 운영할 예정인바, 이를 벤치마킹해서 그 운용상황을 보아 우리나라도 공익성 심사를 위한 별도기구의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나. 민간감시단체의 활동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감시를 하는 민간감시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의 운영활동과 회계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을 통해 기부자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34]가 설립되어 활동중임.

○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단체가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공개대상 비영리단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됨으로써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감시를 하는 민간감시단체인 BBB(Better Business Bureau), NCIB(National Charities Information Bureau) 등이 오랫동안 활동하였으며, 2001년 두 단체가 통합되어 BBB 전국자선연맹(BBB Wise Giving Alliance)이 결성됨.

○ BBB(Better Business Bureau)[35]는 부정, 허위 또는 오해를 일으키기 쉬운 기부금품 모집이나 광고활동을 조사·지적해서 기업과 소비자(기부자)를 보호하려는 비영리단체였음.

○ NCIB(National Charities Information Bureau)[36]는 기부자들의 시각에서 자선단체의 기부금사용 및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전국적 운영망을 갖춘 대규모 재단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

□ BBB와 NCIB 두 조직의 정보가 하나로 통합하여 각 지역별 자선단체에 대한 BBB 보고서에 NCIB의 전국자선단체조사프로그램(national charity review program)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추가됨으로써 보다 철저한 감독기관으로서

---

34) 가이드스타 한국재단이 2007년 3월 설립되어 현재 활동중임.

35) http://www.acadiana.bbb.org/about.html
http://www.avagara.com/nonprof/accountability/

36) http://www.avagara.com/nonprof/accountability/

의 역량을 갖추게 됨.

○ 현재 연맹은 자선기관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정(Standards for Charity Accountability)을 제정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에게는 이러한 규정을 기준으로 자선단체를 면밀히 평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부관련 의사결정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연맹은 BBB Wise Giving Alliance Annual Report」라는 연간보고서와 「BBB Wise Giving Guide」라는 계간잡지를 발간하고 있음.

○ 이 자료에는 자선기관 순위 등의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자선단체의 재정상황 및 경영, 기금모금, 홍보활동 등에 대한 평가결과 그리고 자선기관의 활동 목적 및 프로그램, 기부금 운영 상황 등 여러 내용이 포함되어 기부자로 하여금 대상기관에 대한 분석을 가능케 하고 있음.

○ 그리고 연맹의 규정은 IRC §501(C)(3)의 면세대상 공익법인 중 공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 (민간재단은 공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않으므로 제외)와 기타 기부금품모집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함.

2) 개선방안

□ 공익법인의 대한 사후관리는 주무관청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감시단체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민간감시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공익법인의 활동내역과 회계자료를 공시하는 민간단체가 설립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질적인 측면에서나 양적인 측면에서 모두 부족한 단계이므로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민간감시단체의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민간감시단체는 공익법인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할 뿐만 아니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제공하는 정보에는 공익법인의 재무, 경영, 기금모금, 홍보활동 등에 대한

단순한 현황의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하여 그 결과도 공표함으로써 민간감시단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공익법인의 사업내용과 회계자료 등을 공익법인 스스로 이들 민간감시단체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감시단체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적정 인센티브 제공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봄.

3. 공익법인 관리의 투명성 제고방안

가.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공시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민간감시단체를 통해 공익법인의 사업내용이 공표되는 한편, 주무관청에 보고되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대외적으로 공시됨으로써 공익법인 관리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현재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제도로는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공시제도를 두고 있고, 공개자료도 결산서에 한정되어 있어 당해 법인의 상세한 사업내용을 파악하는 데 미흡하다고 판단됨.

○ 현재 사립학교법시행령(제14조제4항)에서 학교법인의 결산서를 당해 학교법인의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41조의6)에서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관청의 게시판에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및 결산서를 20일 이상 공고하거나 관보 등 정기간행물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이러한 공개의무제도도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다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관해 대외적으로 공시할 의무는 주어지지 않고 있음.

□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기준」(公益法人の設立許可及び指導監督基準)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정보 공개를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법인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재무 등에 관한 자료를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원칙적으로 일반 열람을 제공할 것.

① 정관 또는 기부행위
② 회원명단
③ (사단법인인 경우) 사원명단
④ 사업보고서
⑤ 수지계산서
⑥ 실질재산 증감계산서
⑦ 대차대조표
⑧ 재산목록
⑨ 사업계획서
⑩ 수지예산서

○ 소관 관청에서는 위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이들에 대한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열람시킬 것.

□ 또한 일본에서는 공익법인의 기업정보공개 충실에 의한 업무운영의 투명화 및 적정화를 꾀하는 동시에 공익법인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인터넷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업정보공개에 대해서」(2001년 8월 28일 공익법인 등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관계 각료 회의 간사회 합의)가 공표되었음.

□ 일본의 경우 모든 국가 소관 공익법인에 관계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각 부성은 소관 공익법인에 대해「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기준」(公益法人の設立許可及び指導監督基準)에서 ①부터 ⑩까지 게재된 자료를 인터넷에 의해 공개하도록 요청함.

○ 각 부성은 다음에 게재된 사항을 기재한 소관 공익법인의 일람표를 각

부성의 홈 페이지에 기재함. 또 소관 공익법인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람표부터의 간단한 접근(access)이 가능한 조치를 강구함.

① 명칭
② 소관하는 부국(담당국 담당과 등)
③ 공익법인의 주요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④ 설립 연월일
⑤ 대표자의 직책명 및 성명
⑥ 주요 목적 및 사업

□ 또한, 국가로부터 위탁·추천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관계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음.

○ 각 부성은 소관 공익법인 중에 국가로부터 검사·인정·자격 부여 등의 사무·사무의 위탁 및 추천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 또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교부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다음에서 언급하는 사항을 각부성의 홈페이지에 게재함.

① 최신 업무 및 재무 등에 관한 자료
② 사무·사업 위탁 및 추천 등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위탁 및 추천에 관계되는 사무·사업 내용 및 근거 법령명
③ 보조금·위탁비 등의 교부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보조금·위탁비 등의 명칭 및 금액

□ 일본의 경우 모든 국가 소관 공익법인과 국가로부터 위탁 및 추천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정보는 총무성이 정리하여 공표하며,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착수함.

○ 또한 국가는 도도부현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함.

2) 개선방안

□ 공익법인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보가 개별 공익법인 차원에서가 아닌 전체 공익법인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의 사회적 비중과 공익법인에 지원되는 세금혜택・보조금・기부금 등을 고려한다면 국민 전체가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국민이 쉽게 공익법인의 활동내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예: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에 대해 기부금 모집 및 사용내역 등 수입・지출, 자산현황 및 변동내역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 4월내에 표준양식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공시제도 도입방안으로는 다음 방안들이 있을 수 있으며,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임.

○ 현행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와 같이 개별 법령 개정을 통해 소관 주무관청에서 공시하는 방안

○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이 모든 부처에 망라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국무조정실에 별도 기구(예: 공익법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괄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안

○ 국세청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방안: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공시대상, 절차, 심의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임.

□ 만약 별도기구를 설립하거나, 국세청에서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모금 및 지출, 자산 현황 및 변동내역 등 공시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심의를 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정기간(예: 1년) 공시하는 등 portal site를 운영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임.

□ 아울러, 공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 제재수단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나. 고유목적사업회계용 전용계좌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1조의4)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외에 다른 공익법인의 경우 전용계좌 사용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고유목적사업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의 분리,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임.

○ 또한, 현재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확인을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금융흐름과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사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대한 금융흐름이 함께 파악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년부터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대금결제시 개인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37]를 이용하여야 함.

○ 이와 같은 사업용 계좌제도가 정착되면 금융거래와 실물거래의 상호 연계 확인이 가능하여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됨.

2) 개선방안

□ 공익법인에 대하여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유사한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여 고유목적사업회계의 금전출납용 전용계좌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함.

○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는 수익사업회계와 고유목적사업회계로 구분됨.

---

37)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개설제도(소득세법 제160조의5 신설)
-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를 위한 사업용계좌(복수계좌 허용)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위반시 경정사유에 추가, 가산세 부과(미사용 거래금액의 0.5%) 및 미개설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세 과세대상으로서 일반 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전용계좌 사용은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따라서 공익법인의 모든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 회계의 금전출납용 전용계좌에 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함.

□ 구체적인 전용계좌 도입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지출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용계좌를 통하도록 의무화함.

○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직결되는 기부금, 출연금, 회원 회비 등의 수입금액과 인건비, 임차료 등의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하여 수입·지출이 이루어지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자산규모가 일정액(예: 1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임.

□ 전용계좌 사용 의무화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와 같이 가산세 부과 등 제재수단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임.

4. 공익법인 회계의 투명성 제고방안

가. 통일된 회계감독기준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의료법인(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사학기관(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은 별도의 회계기준을 두고 있으나, 종교, 장학, 학술·문화 등 다른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실정임.

○ 2003년 한국회계기준원이 비영리조직의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일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 및 표시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으나, 관련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문화되고 있음.

○ 따라서, 고유목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복식회계보다는 현금주의 단식회계처리를 선호하고, 구체적인 회계 및 재무보고기준이 각 조직에 위임되어 있어 공익법인 간의 재무제표 형식, 종류, 유형이 서로 다르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이로 인해 다양한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달성 정도를 객관적·합리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려움.

□ 우리나라와 법제상 유사점이 많은 일본은 1985년에 제정한 「공익법인회계기준」(公益法人會計基準)[38]을 2004년에 재개정하여, 모든 비영리법인에게 모든 회계장부를 복식부기원칙에 따라 기장하도록 하고, 대차대조표, 재산증감명세서, 재산목록의 작성을 의무화하였으며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한 바 있음.

---

38) 일본은 1977년 3월 공익법인감독사무연락협의회(총무성 산하)에서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을 결정하고 1985년 동 업무를 인계받은 공익법인 지도감독연락회의에서 일부 개정하였고 2004년 공익법인의 활동상황을 일반국민에게 폭넓게 알리기 위해 영리법인의 재무보고방식(예를 들어 감가상각의무화 등)을 반영하여 대폭 개정하였다.

○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재무제표를 대차대조표, 활동보고서, 재무제표변동표로 규정하고 있으며[39], 미국 정부회계연합회는 대차대조표와 수지 및 자금변동명세를 규정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공익법인에 관한 통일된 회계감독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복잡·다기하더라도 통일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재무보고서가 단일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비영리법인의 재무상태와 활동에 대한 비교가능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이러한 회계기준에는 공익법인의 공익성과 목적사업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함.

□ 통일된 회계감독기준 제정을 위해서는 국무조정실에 별도 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에서 회계감독기준을 심의·의결하여 제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추후 신중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와 함께 동 회계기준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임.

나. 외부감사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사립학교법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입학정원 1천명 이상인 대학·산업대학 또는 입학정원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39) 이재욱(2003), p. 11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대상법인의 범위 등에 대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아 공익법인의 외부감사제도는 유명무실화되어 있음.

○ 다른 공익법인 관련규정에서는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반면, 일본은 ① 자산총액 100억엔 이상 ② 부채액 50억엔 이상 ③ 경상이익 10억엔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기준」(公益法人の設立許可及び指導監督基準)에 따라 재무제표 등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 되어 있음.

□ 미국의 경우에도 연방정부는 5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익법인[40]에 대해서는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Circlar No.A-133에서는 외부감사인을 공익법인이 지정한 독립 회계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회계감사 비용은 보조금지출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연방정부 부담)를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이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이 50만달러 미만인 자선단체의 경우에는 매년 자체 작성하는 재무 관련 보고서를 해당 법인을 관할 감독하는 정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제출된 자료는 3년간 관할 기관의 업무시간 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주정부에서는 보조금이 50만달러 이상인 공익법인은 물론 일반 개인에게 기부금을 요청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재무제표(audited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2) 개선방안

40) IRC §501에서는 자선과 상호이익의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를 면세단체(tax-exempt organization)로 규정하고 있음. 비영리단체 중에서 IRC §501(c)(3)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 자선, 교육기관 등이 우리나라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음.

□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총액 일정 규모(예: 10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자산총액 일정규모(예: 10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일본의 경우 자산총액뿐 아니라 부채총액, 총수입액, 총지출액 등을 기준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공익법인을 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총액 이외의 다른 기준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학교법인의 경우 현재도 외부감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한편, 외부감사에 따른 공익법인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시행주기(예: 2~3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국무조정실에 공익법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외부감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후, 각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현행 사립학교와 같이 개별 법령에서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

○ 각 주무관청에서 소관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독자 기준에 의해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경우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임.

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운영 내실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자산가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연받은 법인(예: 종교법인 등), 감사원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는 법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 구체적인 내용은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주식보유·특수관계자 이사취임 등에 관한 사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 공익법인 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매 2년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내에 세무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동 세무확인 결과는 관할 세무서장이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0.07%를 가산세로 부과함.

□ 동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을 개정(2007년 5월)하여 출연자의 친족·사용인과 소송대리·세무대리·고문 등의 거래자까지 외부전문가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외부전문가가 사실과 다르게 부실확인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징계하고 3년간 공익법인 세무확인 수행을 제한하도록 하였음.

2) 개선방안

□ 자산총액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이들 공익법인의 경우 외부전문가에 의한 세무확인제도는 불필요할 것이나, 외부감사 의무화대상이 아닌 경우 세무확인제도가 보다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의 적정사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에서 위반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제도

를 내실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경우 공익법인의 부담증가 문제가 있으므로 외부전문가의 수는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라. 세정활동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방법으로는 일반세무조사, 특별세무조사, 순환(정기)세무조사 등의 방법이 있음[41].

○ 일반세무조사는 특정세목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임.

○ 특별세무조사는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객관적으로 포착된 납세자에 대해서 수행하는 세무조사임.

○ 순환(정기)세무조사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임.

□ 현행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은 수익사업이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함.

○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비해 소홀한 측면이 있음.

○ 더구나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적음.

---

41) 최명근(2002) pp. 204~211.

□ 성실한 공익사업 수행을 전제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여 세정 차원에서의 엄정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변칙적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출연재산이 사적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2) 개선방안

□ 불성실 혐의가 큰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다양한 세무조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으므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익법인의 결산보고서 제출(2007년 2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으므로,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Ⅵ.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방안

1. 기본방향

□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둘째, 공익법인의 관리 및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익법인에 대해 투명성 제고를 요구하는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이 세원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다른 납세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변칙적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사회복지, 교육, 종교, 공중위생, 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설립목적에 맞게 공익법인이 운영된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매우 좋아질 것임.

○ 이 경우, 더 많은 사업가나 재산가가 더 많은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되고 개인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결국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재산의 출연 및 기부의 활성화, 공익법인의 활성화라는 선순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기업가나 재산가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쉽게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세제가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제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정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5%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음.

○ 동 제도는 1990년 12월에 처음 도입하면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1993년말 이를 더욱 강화하여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음.

○ 1996년 12월 세법개정시에는 기존 5% 초과 보유주식에 대한 처분의무를 신설하여 20%까지는 1999년 .12월까지 3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 2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까지 5년내 처분토록 하면서 의무위반시 10년간 초과보유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5%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지나치게 강화하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작동할 수 있음.

○ 선의의 기업가나 재산가가 과다한 상속세를 부담하기보다는, 주식을 공익사업에 출연함으로써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높이거나 이타적 자선행위를 통해 스스로 만족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현 제도하에서는 5%보다 더 많은 주식을 출연하기 어려운 상황임.

○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하려는 출연자는 그 주식을 처분하여 현금이나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대체하여 출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보다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우호지분을 형성하여 적대적 M&A에 대처하는 것을 선호할 것임.

○ 출연주식이 상장주식이고 5% 초과분이 클 경우 초과분을 증권시장에서 매도하게 되면 그 상장회사는 경영권의 위협을 받거나 적대적 M&A의 표적이 될 소지가 있고 출연주식이 비상장주식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영권 문제 이외에도 초과분 매도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동일기업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강하지 않은 편임.

○ 민간재단의 활동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민간재단에 허용하고 있는 동일법인 의결권주식의 보유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20%로 정하고 있음[42].

○ 일본의 경우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나[43],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주식이 기부되는 경우 동일법인 의결권 주식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식을 출연하는 데 제한이 없음.

□ 현행 세법에서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보유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일 것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을 것

○ 당해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을 것

○ 주무장관이 당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

42) 제3자가 이미 기업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5%까지 허용하고 있음.

43) 그러나 재산관리운용의 경우로서 상장주나 장외 공개주와 같이 공개시장을 통한 포트폴리오인 경우는 영리기업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현행 주식출연·취득 한도 5%는 당초 20%에서 1994년부터 5%로 축소된 것으로, 최근 지주회사 설립허용(1998) 등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다시 원래 수준인 20%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우회적인 계열기업의 지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용계좌 도입, 공시제도의 충실한 이행, 외부감사 이행 등 일정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

□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한도 완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지주회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외부감시가 많고 자산운용에 제한이 따르는 공익법인을 통하여 기업을 지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음.

○ 즉,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기업 지배가 허용된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지주회사보다는 공공성이 강한 공익법인 형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법·제도는 물론 사회적인 감시측면에서도 공익법인이 일반지주회사에 비해 더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공익법인 출연 자체에 대한 제약은 완화되어야 함.

○ 최근 국내 주요 상장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적대적 M&A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한 관리만 확보된다면 필요시 우호지분의 역할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함.

○ 공익활동은 그 자체가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시장기구에만 맡기면 최적수준 이하로 과소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라고 판단됨.

□ 따라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하려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일 것임.

○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기업 주식의 출연·취득을 제한하더라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지분 50%, 상장법인의 경우 30%)에 비해 5% 초과보유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기관투자가가 소유할 수 있는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소유한도와 비교해 보아도 주식의 초과출연기준인 5%는 너무 낮은 수준임. 기관투자가가 소유할 수 있는 동일회사 발행주식의 소유한도는 은행이 10%, 보험회사가 5%, 투자신탁회사가 20%인바, 5%는 낮은 수준임.

3.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 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지주회사화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부담 없이 계열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제한 규정 외에 계열기업 주식보유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 1999년 세법개정시 기존의 동일기업주식 5% 초과보유 제한에 추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을 신설하여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30% 초과보유분에 대해 매년 초과보유 주식 시가의 5%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하였음.

□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경우 기업가는 공익성 도모라는 명분을 내걸고 재산을 출연하여 조세회피를 하고 공익법인을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영리법인과의 경쟁관계에서도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지주회사제도의 가장 큰 목적중의 하나가 전략적 경영과 사업 경영을 분리[44]하는 것인데, 공익법인의 목적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영리적 목적으로 그룹의 전략적 경영을 수행하는 것은 공익법인의 목적과

44) 전략적 경영과 사업 경영이 분리되면, 지주회사는 경영자가 일상적인 경영판단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을 결정하고 사업회사는 권한위임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을 함으로써 그룹 전체를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음.

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주회사의 설립허용, 적대적 M&A에 대처하기 위한 우호지분의 필요성 등 공익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의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현행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인 총자산가액의 30% 제한은 기업주의 주식 출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됨.

나. 개선방안

□ 공익법인의 동일기업 주식 취득제한 완화방안과 연계하여 투명성이 전제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총자산가액의 5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출연자가 계열사의 주식을 공익법인의 출연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출연방법임을 고려할 때,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완화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동일기업 주식출연한도 완화와 마찬가지로 우회적인 계열기업의 지배수단이 되지 않도록 전용계좌 도입, 공시제도의 충실한 이행, 외부감사 이행 등 일정 투명성 요건을 충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임.

4. 사후관리제도의 합리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하였으므로 출연받은 재산이 당초 목적대로 공익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당초 면제한 상속세·증여세를 추징하기 위한 다양한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다만, 그 동안 출연자의 세금에 대한 인식부족과 사소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대해서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제도 사이에 큰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증여세를 면제받아 출연한 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공익법인을 출연자 개인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변칙운용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추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사후관리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하는 경우 추징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세정 집행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표 Ⅵ-1>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 요약

공익법인의 공익성 유지를 위한 제도
① 출연재산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의무 → "미사용 재산가액 × 증여세율"에 상당하는 증여세 과세 ② 수익사업 운용소득의 70% 이상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5년 평균) → "미달사용액 × 10%"의 가산세 부과 ③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1년이내 30%, 2년이내 60%, 3년이내 90%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미달사용액 × 10%"의 가산세 부과 (3년차 미사용분은 증여세)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
④ 의결권있는 동일종목 주식의 5% 초과 보유금지 → "초과보유분 가액 × 증여세율" 상당의 증여세 과세 ⑤ 총재산가액 중 계열사 주식보유비중을 30%이하로 제한 → 매년 "초과보유분 가액 × 5%" 가산세 부과 ⑥ 공익법인에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취임하거나 임직원(이사 제외)으로 고용 금지 → 관련경비(인건비 등) 전액 가산세 부과 ⑦ 공익법인이 정당한 대가수수 없이 계열기업 광고·홍보 금지 → 관련경비 전액 가산세 부과
공익법인의 출연자 사적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 등
⑧ 상속재산을 출연시 상속인은 이사선임이 배제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하여 중요사항의 결정권 배제 → "출연재산가액 × 상속세율" 상당의 상속세 부과 ⑨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연재산 이익의 귀속 또는 사용·수익 금지 → 귀속되는 재산가액 또는 이익 × 상속 증여세율 상당의 상속 증여세 부과
기타 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 등
⑩ 자산가액 30억원 이상 공익법인에 대하여 매 2년마다 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세무서에 결과보고 의무부여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⑪ 장부 작성 및 10년간 보관의무 부여 →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가산세 부과

나. 개선방안

□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후관리제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는 출연재산이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혜택이 부여되며, 공익법인별 사후관리요건과 위반에 따른 세금부과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여 공익법인 출연자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지나친 사후관리제도는 합리화하여 실제 집행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예를 들면, 현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공익법인 임직원(이사, 교사·의사 등 제외)으로의 고용을 제한하면서, 위반시 인건비 등 관련 경비를 전액 가산세로 추징하는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으므로 다른 가산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5.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제1주제 발표자료로 대체

Ⅶ. 결론

□ 공익사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기구에만 맡기면 최적수준 이하로 과소공급되기 때문에 정부는 공익활동의 적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법인에 대해 세제지원을 함.

○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공익법인의 공익활동은 외국에 비해 크게 미흡한 편이며, 공익법인 중에서는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음.

○ 공익법인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 사회적으로 조세회피나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면,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이나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가 공익법인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되,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익법인이 사업의 종류, 규모, 형태, 주무관청 등에 있어 매우 복잡다기하게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일시에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자산규모,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규모가 큰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종교법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학교법인은 일부 제도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임.

○ 세제지원이 공익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단계부터 공익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해야 할 것임.

- 2008년부터 공익성을 심사할 별도의 기구인 공익인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인 일본의 경우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도 공익성 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도입할지 여부를 추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기부금 사용,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감시를 하는 민간감시단체의 역할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민간감시단체는 공익법인의 업무 및 재무에 관한 자료, 공익법인에 대한 평가 등을 인터넷싸이트와 보고서를 통해 공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둘째, 공익법인의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임.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과 관련한 정보가 현재는 개별 공익법인 차원에서 인터넷 싸이트 등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데, 전체 공익법인 차원에서 공시할 수 있을 것임.

-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예, 자산총액 30억원 이상)에 대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 주무관청에서 공시할지 국무조정실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공시할지, 국세청에서 공시할지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업용계좌와 유사한 전용계좌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공익법인의 모든 계좌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목적사업회계의 금전출납용 전용계좌에 한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함.
- 전용계좌 사용이 의무화되는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도입하되, 자산규모가 일정액(예: 10억원)이상인 공익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 셋째, 공익법인의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

해야 할 것임.

○ 공익법인에 관한 통일된 회계감독기준을 마련하여 다양한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을 규격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복잡·다기하더라도 통일된 형태와 내용을 갖는 재무보고서가 단일기준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공익법인의 재무상태와 활동에 대한 비교가능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공익법인의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일정규모(예,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를 의무화할 수 있을 것임.

- 학교법인의 경우 현재도 외부감사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임.
- 외부감사에 따른 공익법인의 비용부담 등을 고려할 때 시행주기(예: 2~3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세무확인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공익법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불성실 혐의가 큰 공익법인에 대한 세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영리법인에 대한 다양한 세무조사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
- 고유목적사업만 있는 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세제상 혜택을 받으므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익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재산의 출연 및 기부의 활성화, 공익법인의 활성화라는 선순환 과정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기업가나 재산가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사업을 쉽게 결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동일기업 주식출연한도를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출연자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후관리제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에 대한 지나친 사후관리제도는 합리화하여 실제 집행에 있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사후관리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국세청, 『공익법인 세무안내』, 2007.

_____,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진수,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향』, 정책보고서 96-10, 한국조세연구원, 1996.

_____, 「기업의 기부활동과 조세정책」, 『재정포럼』, 2005년 9월호, 한국조세연구원, 2005.

손원익・김진수, 『공익법인 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0.

영화조세통람, 『조세편람』, 2007.

이재욱,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2003.

최명근,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적 개선방안-세무절차의 민주화를 중심으로』, 정책보고서 02-04, 한국조세연구원, 2002.

박정우 외 2인,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세무학회, 2004.

허은영, 『문화예술관련 세제 개선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http://www.guidestar.or.kr, "시민사회정보시스템 주요 서비스".

税務経理協會, 『公益法人ハンドブック: 設立・會計・税務のすべ-て』, 7訂版, 2006.

公益法人會計研究會, 『公益法人の 運營實務と 税務・會計 Q&A』, 2006.

税務省 編, 『公益法人白書: 公益法人に關する年次報告』, 2006.

行政改革홈페이지, 『公益法人制度の抜本的改革に關する基本方針』, http://www.gyoukaku.go.jp, 2003.

内閣官房行政改革推進事務局, 『公益法人制度改革に關する「新制度の概要」』, http://www.npobp.gr.jp, 2005.12.

Bakija, Jon, and William Gale, *The Effects of Estate Tax Reform on Charitable Giving*, Brookings Institution, 2003.

Better Business Bureau of Acadiana, *About the Better Business Bureau,* http://www.acadiana.bbb.org.

Brhlikova, Petra, "Models of Competition Between One For-profit and One Nonprofit Firm," Working Paper Series, GERGE-EI, 2004.

Center for NPO Management, *Legal Responsibilities of Your Non-Profit Corporation*, 2005.

Congress and the Nonprofit Sector, *Strengthening transparency governance accountability of Charitable Organization*, 2005.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Estae Tax and Charitable Giving," CBO Paper, 2004.

Futurefocus, *Annuity Rates*, http://www.futurefocus.net.

GAO, *Tax exempt organizations collecting More data on Donor-Advised Funds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could help Address compliance challenges*, 2006.

Give. org, "BBB Wise Giving Alliance 2005 Annual Report," http://www.give.org

Greene, Pamela, and Robert McClelland, "The Effects of Federal Estate Tax Policy on Charitable Contributions," Technical Paper Seri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01.

Irons, John S., *The Estate Tax and Charitable Giving: Srate-by-State Analysis*, OMB Watch, 2003.

IRS, "Tax Exempt Status for your organization," IRS Publication 557, 2005.

_____, "Charitable Contribution for in preparing 2006 Returns," IRS Publication 526, 2006.

Joulfaian, David, "Estate Taxes and Charitable Bequests By The Wealthy," NBER Working Paper Series, 2000.

Michigan State University, *Charitable Gift Annuities*, http://www.pgaol.msu.edu

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United States, 1996 - 2006*, http://nccsdataweb.urban.org

New York State, *Internal Controls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for Not-for-Profit Boards*, http://www.oag.state.ny.us/charities, 2005.

Pacific Life, *Understanding Charitable Remainder Trusts*, http://www.pacific.com, 2004.